

현안분석 2007-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ith Special Respect to response to such change in financial structures-

연구책임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an, Jung-Mi

2007. 9.

국문요약

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영업형태는 IMF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개인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2003년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개인신용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및 업무제휴 확대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오남용에 대한 개인적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게 되었다.

신용정보관리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2007년 6월 입법예고),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화된 금융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보호와 활용을 겸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신용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넓은 적용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과 함께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여 처리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등에 따른 신용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여야 할 가치에 비해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 수준을 일반적인 신용정보에 있어서는 서면동의를 비롯한 opt-in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opt-out의 기회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 자사의 마케팅을 위한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인 신용정보 주체의 피해 및 정보유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마케팅을 위한 자사의 범위, 자사의 상품 등의 한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을 경우 동의방법의 다양화 및 동의수준의 환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신용정보,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동의방법, 합리적 공유

Abstract

The credit 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an essential factor for financial systems that enable proper distribution of assets and funds by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credit scores of financial consumers.

The business practices of Korea's financial companies are characterized by an abrupt surge in individual loans while corporate loans decreased during the recovery process from the financial crisis a few years ago.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credit evaluations has become salient after the liquidity crisis in 2003. Amidst the continuous increase in user demand for individual credit information due to growing competitiveness and business tie-ups among financial companies, the breakneck speed of IT development has made individuals more susceptible to credit information leakage and invasion of privacy.

The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prepared a revised bill named 'Law for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hereinafter Credit Information Law, scheduled legislation in June 2007). The basic direction of the bill focuses on the simultaneous improvement of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That is, the bill aims to improve the mediating function of finance through credit information infrastructure enhancement and to encourage an advanced financial transaction routine based on credit scores.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n financial structures, prior structures based on protection should be adjusted to systems that promote both protection and usage. To this end, the current revised bill still has much to be discussed and supplemented.

One suggestion is to qualify the excessively broad application range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credit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legislation of a general law for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concept of credit information used in the Credit Protection Law should be adjusted to determine different standards for different instances.

From the aspect of credit information utilization following the structural reform of financial institutions, numerous problems in interpretation are arising thanks to the relative lack of regulations comparative to the benefits of sharing credit informa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rational sharing and utilization of such information.

The level of approval stipulated in article 23 and 24 of the Credit Protection Law should be adjusted to make opt-in with written approval principle for general credit information. In the exceptional cases of merger or business endorsement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clearl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opt-out would be preferable.

In addition, the utilization of credit information for marketing activities examined in the revised bill raises the risk for credit information leakage for individuals and leads to problems regarding damage and compensation for financial consumers. Consequently, this is a issue that requires cautious approach and only when the definitions of ‘company’ and ‘company productions’ are clearly defined can enhancements regarding the diversification of approval methods and levels be examined.

※ Keywords : credit information, financial consumers,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pproval methods, rational sharing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 2 장 신용정보의 개관	13
제 1 절 신용정보 관련 기본개념	13
I. 신용정보	13
II. 금융기관	20
III. 정보주체	21
제 2 절 신용정보업 현황	22
I. 신용정보산업 업무변화의 필요성	22
II.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범위	24
제 3 절 신용정보 관련 입법체계	25
I. 미 국	25
II. 영 국	28
III. 독 일	33
IV. 일 본	36
V. 우리나라	39
제 3 장 금융기관의 변화와 정보주체의 대응	43

제 1 절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43
I.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43
II.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44
III. 금융기관의 변화추세	45
제 2 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47
I. 동의방법의 개선	47
II. 정정청구권 보장	50
III. 동의철회의 실효성 확보	51
제 4 장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활용방안	53
제 1 절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의 공유	53
I.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	53
II. 신용정보의 합리적인 공유방안	58
제 2 절 자사상품 마케팅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	66
I. 신용정보 이용목적 제한과의 관계	66
II.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73
제 5 장 결 론	77
참 고 문 헌	81

【 부 록 】

(미국) Gramm-Leach-Bliley Act	89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1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영업형태는 IMF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개인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2003년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개인신용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및 업무제휴 확대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오남용에 대한 개인적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게 되었다.

신용정보관리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2007년 6월 입법예고),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 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화된 금융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있어서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자본시장 관련법은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의 개선을 꾀

하기 위해 2006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시행예정이다.¹⁾

이 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자본시장에서 영위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 또는 금융상품의 규제를 철폐하여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던 금융상품 및 거래고객의 정보는 새로 설립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를 하였을지라도 새로 설립되는 금융투자회사에 고객정보가 흡수통합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제공 목적 외의 신용정보 제공으로 보아 개별 동의를 새로 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위주의 현행 신용정보법 적용 체계를 개별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정보 주체의 관점에서 신용정보 보호 및 활용체제로 변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신용정보법의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로 금융산업의 소위 금융빅뱅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동의에 관한 문제와 최근 입법예고된 바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신용정보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포천지 선정 2004년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국내 금융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며, 그나마 251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삼성과 현대, 대우, LG(현 우리), 대신 등 국내 5대 증권사의 2000년부터 2004년 평균 총자산은 4조원,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원으로 각각 미국 5대 증권사 대비 0.8%와 2.3%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은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의 필요에 의한 결과일 것이며, 이러한 결과로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대신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서술방법의 면에서는 전체 제5장의 구성으로 각 중요 사항별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와 우리나라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연구범위 면에서는 신용정보법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보다는 금융기관 구조변화와 함께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동의에 관한 사항과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 등의 방법을 주로 연구한다.

셋째, “신용정보”의 용어 사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서의 “신용정보”, 미국 GLBA에서의 “비공개 개인정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용어를 내용상 동일하게 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넷째, 전체구성을 보면 제2장에서는 신용정보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및 신용정보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항목별로 외국의 입법 규정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신용정보 관련 입법체계 및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용정보 처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기본개념 예컨대, 신용정보, 금융기관, 정보주체에 대한 정의를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동의방법의 개선 및 정정청구권, 동의철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금융기관에게 신용정보는 단순히 정보이상의 활용가치가 있으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그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범

제1장 서론

위 내에서 합리적인 공유를 통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금융기관 구조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자 금융기관의 합병, 영업양도, 금융상품 등 자사상품의 마케팅 활용방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2 장 신용정보의 개관

제 1 절 신용정보 관련 기본개념

I. 신용정보

1. 신용정보의 입법례²⁾

(1) 미 국

GLBA에서의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 : NPI)를 보면,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거래신청시 제공하거나, 당해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그를 위한 서비스의 결과로서 생기는 것 또는 금융기관이 달리 취득한 것으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상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금융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금융기관과 소비자와의 거래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기타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이에 해당한다(제509조(4)). 이 경우의 소비자는 사업 목적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개인으로서, 법인은 제외된다(제509조(9)).

(2) E U

EU의 경우를 보면, EU Directive는 가맹국인 유럽각국에게 지정된 시한 내에 Directive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국내법에 입법화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의 입법에 관하여 EU는 1995년에 “개인정보 처리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정보지침”을 내렸으며, 그 주

2)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설명하였으며,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정의는 직접 다루지 않고 개별 국가의 각주로 설명하였다.

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제7조),³⁾ 민감정보에 대한 예외적 취급(제8조),⁴⁾ 정보처리자의 고지의무(제10조, 제11조),⁵⁾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제12조) 및 이의신청권(제14조)⁶⁾를 들 수 있다.

(3) 영 국

위 Directive의 영향을 받은 영국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에 의하면 개인데이터란 당해 데이터 또는 데이터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 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및 기타정보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데이터 관리자 또는 기타의 자의 당해개인에 관한 의견의 표명 및 의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동법 1조 1항).⁷⁾

이와 같이 유럽의 EU Directive와 그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들의 경우 “생존하고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더욱 강화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동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묵시적 동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민족, 정치적 성향, 종교, 철학적 신념, 건강, 성생활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동의를 요한다.

5)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시 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개인정보주체에게 처리자의 신원, 처리의 목적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개인정보처리에 반대할 권한이 있다. 단, 마케팅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를 반대할 수 있다.

7) Data Protection Act 1998 : “personal data” means data which relate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 (a) from those data, or (b) from those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예컨대, 영국 데이터보호법에서는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는 개인 데이터란 당해 데이터 또는 데이터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유 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및 기타정보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데이터 관리자 또는 기타의 자의 당해개인에 관한 의견의 표명 및 의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제1조 1항).⁸⁾

(4) 독 일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personenbezogene Daten)는 특정 의 또는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본인)의 인적 또는 물적 상황에 관한 개개의 언명(Einzelangaben)을 말한다(3조 1항).⁹⁾

8) 민감한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 : 데이터주체의 민족, 인종적 출신사항, 정치적 견해, 종교적 믿음이나 유사한 성격의 믿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Consolidation) Act 1992)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정신적, 육체 적건강상태, 성생활, 법률위반사실 또는 추정된 위반사실, 법률위반이나 추정된 위반에 대해 소송여부, 해당소송의 처리 재판결과 받은판결 등과 같은 민감한 신상정보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관리자가 처리할 때에는 ‘데이터 보호원칙’ 및 데이터처리를 위한 조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동법 2조).

9)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민감한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①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란 인종적 및 민족적 출신, 정치적 의견,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신념, 노동조합에의 가입, 건강 또는 성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조 9항).

②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가 수집·취급·이용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는 한층 더 명시적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4a조 3항).

③ 자기의 업무 목적을 위한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의 수집·취급·이용은 본인이 상기 ②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된다(28조 6항).

- 개인 또는 제3자의 사활과 관계되는 이익의 옹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당사자가 육체적 또는 법적인 이유에 의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본인이 공적으로 행한 명백한 정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
- 법률적인 청구권의 주장,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고, 수집·취급·이용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보호에 적합한 이익이 우월하는 것을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 학술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연구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의 학술적인 이익이 수집, 취급 또는 이용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하며, 연구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달성에 과도한 지출을 요하는 경우.

(5) 일 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대조할 수 있고, 그로써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조 1항), ‘개인데이터’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로 정의하여(제2조 4항)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서 특정의 개인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과 그 외에 특정의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였으며(제2조 제2항), ‘보유개인데이터’를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열람, 내용의 정정, 추가삭제, 이용의 정지, 소거 및 제3자 제공의 정지를 행할 수 있

④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의 수집은 또한 이것이 건강에 대한 배려, 의학상의 진단, 건강 관리 또는 공중위생 업무상 취급 또는 공중위생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 취급이 의사 또는 동등한 비밀을 지킬 의무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허용된다. 상기의 목적을 위한 정보 취급 및 이용은 상기의 의사 등에 적용되는 비밀준수 의무규정에 따른다(28조 7항).

⑤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 는 상기 ③ 및 ④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상기 ③의 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상기 ④의 요건 하에서만 제공 또는 이용이 허용된다. 제공 또는 이용은 이것이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현저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의 추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된다(28조 8항).

⑥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적 경향을 가지고 수익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은 그것이 조직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의 수집, 취급 또는 이용이 허용된다. 이는 그 구성원 또는 그 조직의 활동 목적과 관련되고 조직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에게만 적용된다. 이 개인 정보의 조직외의 자 또는 기관에의 제공은, 상기 ②의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28조 9항).

⑦ 익명화 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가 업무상 수집 및 축적되는 경우에도 상기 ③부터 ⑥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30조 5항).

⑧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 또는 범죄 행위 또는 질서 위반에 관한 정보가 문제가 되고 그 정확성을 책임기관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면 안된다(35조 2항 2호).

는 권한을 가지는 개인데이터이고, 단, 그 존부가 밝혀짐에 따라 공익 기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1년 이내에 정령의 정하는 기간 내에 삭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 및 보유기간과의 관계도 정의하고 있다.¹⁰⁾

2. 신용정보 개념의 재정립

(1) 현행법상 개념의 모호성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의 정의규정을 보면,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¹¹⁾ 등 상거래¹²⁾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열거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의 신용정보법의 제정법안을 보면,¹³⁾ 종래 신용조사업자가 영위하던 좁은 의미의 신용조사업의 개념을 수정하여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일괄하여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의 개념을 설정하고,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을 그 신용정보업에 포함시켰으며, 신용정보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창안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당시 공공정보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정보법에 의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각각 관리되는 체제를 가지는

10) 個人情報保護法制研究會,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2005, 45面.

11)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12) ‘상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일반법인 상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 상행위로 인한 거래관계로 볼 수 있다.

13) 국회사무처, 제170회 국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국회사무처, 94. 11. 30) 참조.

것으로 기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의 경우 이와 달리 미국의 GLBA나 FCRA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식별정보¹⁵⁾를 포함 시킴으로서 유럽식의 개인정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즉,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신용정보와 개인정보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또한, 신용거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대출·보증현황·신용카드·당좌개설 등의 신용거래정보와 연체, 부도 등의 신용불량정보를 구분하였으나, 2005. 4.부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정보법령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2) 개인신용정보 개념의 명확화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상 모호성이 지적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보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고 있으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

14)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6, 77쪽.

1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에 의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즉, 식별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신용정보로 구분될 수 있다.

16)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인프라로서의 신용정보관리제도”, 2006. 4, 23쪽.

으로 하였고, “사상·신념에 대한 정보, 노동조합, 정당 및 사회단체의 가입, 그 밖에 차별적 대우의 위험이 큰 개인정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는 민감정보로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기준·동의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¹⁷⁾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과 함께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도 신용정보를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로 분리하여 처리기준 및 동의수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거래정보나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유통시 개인의 사생활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보호수준을 보호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의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1> 신용정보의 범위

종 류	내 용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성별, 국적, 직업 • 기업 및 법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과 관련한 거래의 종류 •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 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을 공공기관 보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 법원의 금지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관련 결정에 관한 정보

17)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 제2조 정의, 제7조 개인정보 처리기준, 제8조 민감정보 처리기준 참조.

종 류	내 용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 정보 •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 등의 체납관련 정보 • 개인의 주민등록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 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 등에 관한 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료 : 정재욱 외,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II. 금융기관

GLBA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상의 금융기관인 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기관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예컨대, 증권회사, 선물회사,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¹⁸⁾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각기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보험회사·증권회사·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에는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고, 이 외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에는 종합금융회사·자산운용회사·상호저축은행·

18) 보험회사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의 규율을 받는데, GLBA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예금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그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투자회사·선물회사·자금중개회사·투자자문회사·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3대 축으로 유지하면서 핵심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여 왔으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구분기준에 제한받지 않고 금융겸영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보주체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는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이고(제2조 2호), 이 법에서 실질적인 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될 것인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6호). 여기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제조합, 신용보증재단, 감사인, 할부판매업자, 유통사업자, 중소기업, 자산총액 1조원 이하 기업, 전시통신사업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우리법의 이러한 개념은 외국법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GLBA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으로 고객(customer)과 소비자(consumer)가 있다. 고객이란 금융기관 등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개인고객을 말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자나, 보험회사

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란 개인, 가족 또는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 고객을 의미한다(15 U.S.C. 제 6809조 (9)). 예컨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은행의 ATM을 이용해 예금 인출을 서비스 받는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 상업 또는 농업을 위해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소비자의 범위는 고객의 범위보다 넓다. 따라서 모든 고객은 소비자에 포함되지만, 모든 소비자가 고객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또한,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개념은 보이지 않으나 ‘데이터의 주체(data subject)’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개인으로 국적, 거주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인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에는 전술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⁹⁾

제 2 절 신용정보업 현황

I. 신용정보산업 업무변화의 필요성

신용정보산업은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여 경제주체간의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²⁰⁾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자원의 효

19) 민감한 개인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 : 데이터주체의 민족, 인종적 출신사항, 정치적 견해, 종교적 믿음이나 유사한 성격의 믿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Consolidation) Act 1992)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성생활, 법률위반사실 또는 추정된 위반사실, 법률위반이나 추정된 위반에 대해 소송여부, 해당소송의 처리 재판결과 받은 판결 등과 같은 민감한 신상정보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관리자가 처리할 때에는 ‘데이터보호원칙’ 및 데이터처리를 위한 조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데이터보호법 제2조).

20)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의견상으로부터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에 대한 대출

울적 이용을 도모하는 금융인프라이다.

우리나라 신용정보업계의 특징을 보면 채권추심업무가 업계 전체 매출액의 78.6%(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²¹⁾ 이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채권의 처리를 목적으로 채권추심 전문회사의 설립이 대폭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²²⁾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경제주체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신용평가기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경향은 선진형 금융인프라 산업을 주장하고 있는 신용정보업계의 업무비중의 변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 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신용조사	229	3.5	272	3.2	309	3.7	316	3.5
채권추심	4,938	76.7	6,590	78.8	6,303	76.4	7,084	78.6
신용조회	276	4.3	290	3.5	364	4.4	374	4.1
소 계	5,437	84.5	7,152	85.5	6,975	84.5	777.4	86.2
신용평가 ²⁾	999	15.5	1,215	14.5	1,275	15.5	1,249	13.8
합 계	6,436	100.0	8,367	100.0	8,251	100.0	9,013	100.0

주 : 1) 신용평가에는 기타 겸영 업무 매출 포함

미국에서는 2006년 9월 29일 ‘신용평가기관개혁법(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of 2006)’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과 같은 역선택이나 차주의 대출금 유용과 같은 도덕해이 문제 발생으로 신용공급 가격과 규모 등이 왜곡되어 사회적·경제적 비효율 초래하게 된다.

- 21) 종합신용정보회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채권추심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있어 동 업무가 종합신용정보회사의 주 수입원이자 경영의 기반이 되고 있다.
- 22) 현재 신용평가 시장에는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사가 영업 중이고, 이 중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나머지 3개사는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

투명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개정하여 신용평가기관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인신용평가기관(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s Organizations : NRSROs)”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즉, 인지도 있는 신용평가기관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신용평가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SEC가 해당 신용평가기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신용평가 산업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²³⁾

II. 신용정보회사 업무의 범위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채권추심업의 4가지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신용정보회사는 핵심업무 유형에 따라 크게 종합신용정보회사, CB회사, 채권추심회사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종합신용정보회사는 신용평가,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무 등의 모든 신용정보업을 인가받은 법인이 해당된다.

<표-3> 신용정보회사의 주요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신용조회 업무	개인 및 기업의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를 수집·정리하여 DB화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23) “AFP Applauds Signing of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http://www.afponline.org/pub/res/news/ns_20060929_cra.html

구 분	업 무 내 용
신용조회 업무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CB(Credit Bureau)업무로 발전하는 추세
신용조사 업무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또는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
신용평가 업무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신용등급을 부여
채권추심 업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을 행사 - 공공부문 채권과 개인의 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

자료 : 한국은행, 『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 2006. 3, 2쪽.

제 3 절 신용정보 관련 입법체계

I. 미 국

1. 신용정보 관련 법의 연혁

미국은 세계 신용정보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큼 신용평가부터 채권회수까지 종합신용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인 신용정보법이 아닌 내용과 적용기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포괄적 규제방식을 적용한 『소비자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 ‘CCPA’)』을 제정하였고, 신용조사, 조회 및 평가는 CCPA 법률 내의 『공정신용보고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 ‘FDCP’)』으로 규율하고 있다.

신용정보에 국한하여 본다면,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하여 적용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있고 민간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대표적인 법률로는 『그람-리치-블라일리법(The Gramm-Leach-Bliley Act : ‘GLBA’),²⁴⁾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 ‘Sarbox’),²⁵⁾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 ‘FCRA’) 등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GLBA의 제정에 의해 금융현대화는 촉진되었으나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연방회의는 2003년 말 효력이 종료되는 FCRA의 효력을 연장한 『공정·정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 ‘FACT’)』을 제정하여²⁶⁾ 명의도용(identity theft)과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도용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한층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부과하였다.

이 외에도 신용정보와 관련하여서 금융거래시 차별금지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신용기회균등법(The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 ‘ECOA’),²⁷⁾ 채무자 추적의 경우 유의사항과 채무자 학대 및 불공정 관행금지 등 채권추심 실무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공정채권추심관행법(The Fair Collection Practices Act)』등이 있다.

24) 이 법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f 1999)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보호규정은 제5장(Title V)에 규정되어 있고, 15 U.S.C. §§6801-6810에 편찬되어 있다.

25) 엔론 사태 이후 기업회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에서는 공개법인의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당해 법인의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감사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CEO와 CFO는 신용정보의 열람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게 되었다.

26) <http://www.treasury.gov/offices/domestic-finance/financial-institution/cip/pdf/fact-act.pdf>

27) ECOA의 차별조치 금지(제701조(a))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은 신용거래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생국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2. FCRA의 주요내용

FCRA는 개인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1970년 우리나라의 신용정보기관에 해당하는 소비자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제정된 연방법으로 (1996년 개정), 소비자보고기관이 정보의 기밀성, 정확성, 관련성 및 적정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을 따르고, 소비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소비자 신용정보 등에 대한 상업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당한 절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보고기관 외에 소비자보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 소비자 보고기관으로부터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널리 규제하고 있고, 그 대상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3. GLBA의 주요내용

GLBA는 미국의 종래 상업금융업과 투자금융업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을 대체하여 미국 금융업의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유명하며, 이 법으로써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

28) GLBA보다 엄격한 주법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제507조(b)),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03년 8월 GLBA보다 엄격한 「금융정보프라이버시법(California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Act)」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Am. Bankers Ass'n v. Lockyer* 2004 U.S. Dist. E.D.Cal. D.C.No.CV-04-00778-MCE(CFIP법은 금융기관의 관련회사와의 정보공유에는 opt-out을, 비관련의 제3자와의 정보공유에는 opt-in을 요구하는 등 GLB법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동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은 새로운 대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행협회는 동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를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GLB법은 주법이 GLB법보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507조 (b)). 항소심판결은 FCR법과 GLB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GLB법은 FCR법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FCR법상의 주법에 대한 우선 조항은 GLB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412 F. 3d 1081; 2005

라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관, 정보공유에 관한 금융기관 정책의 통지, 금융소비자의 정보공유에 대한 거부권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²⁹⁾ 따라서 GLBA는 기존 FCRA 등의 프라이버시 규정들을 보완하고 넓은 의미의 금융기관들³⁰⁾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4> 미국의 신용정보 관련 법률 비교

법률명	적용대상	입법목적	보호대상	적용관계
The Gramm-Leach-Bliley Act(GLBA)	금융기관	- 금융기관간 개인신용정보 제공 규제 - 소비자 권리 규정	- 비공개 개인정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등)	- 소비자보고에 관해서는 FCRA 우선 적용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FCRA)	금융기관 및 소비자 보고기관	- 소비자보고서 및 신용보고기관 규제 - 소비자 권리 규정	- 소비자보고(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태, 신용능력, 성격, 일반적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상태 등)	- 비공개 개인정보는 GLBA가 우선 적용 (GLBA 제 506조)

II. 영 국

1. 개인정보 관련 입법 연혁

영국의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에 적용되

U. S. App., No. 01-16334)).

29) 박현일,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방법”, 계간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6. 6, 49쪽.

30) GLBA의 규제대상기관(제509조(3)) - 금융기관 :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조합, 모기지회사 등)

는 개인 정보보호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³¹⁾ 동법은 그 적용범위가 광대하며,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의 특성상 각 개별영역의 특수한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특정영역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법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1997년 EU지침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1999년 전자통신규칙 -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9 - Data Protection and Privacy -)’³²⁾, ‘2000년 조사권에 관한 법률규칙(The Regulations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³³⁾ 등이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 등 평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1974년 소비자신용법(The Consumer Credit Act 1974)」, 자신의 건강정보 또는 치료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1988년 의료기록 접근에 관한 법률(The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1990년 건강기록접근에 관한 법률(The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과거의 범법행위가 상세하게 폭로 되지 않

31)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제의 입법모델로는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 규정을 두는 방식인 옴니버스(omnibus)형으로 EU지침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구획(segment)형으로 캐나다가 취하는 방식, ③ 일반법은 없고 개별영역마다 개별법에 의해 규제하는 개별영역(sector)형으로 미국이 취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해국가의 법적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고, 또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이 혼재하기도 한다. 황종성 외, 『국의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NCA I-RER-04080, 2004. 12, p. 11-12쪽.

32) 동 규칙은 종합정보통신망(ISDN), 공공디지털모바일네트워크(public digital mobile network), 주문형 비디오(VOD), 쌍방향TV 등 새로운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하지 않는 팩스나 전화와 같은 스팸통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33) 동 규칙은 EU 전자통신분야에서의 정보보호지침 제5조의 내용을 시행하는 별도의 입법으로 공공,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전자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도록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범법자 사회복귀법(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등의 법률이 있다.

<표-5> 영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 현황³⁴⁾

구 분	법 률
개인 정보	- 1998년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
정보 공개	- 2000년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전자 통신 분야의 정보 보호	- 1999년 전자 통신 규칙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The Telecommunications (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 (1999/2093)) - 2000년 조사권에 관한 법률 규칙(The Regulations of Investigation Powers Act 2000)(RIPA 2000) - 2000년 전자 통신 규칙(합법적인 사업 관행) (통신 차단) (The Telecommunications (Lawful Business Practice)(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0 (2000/2699))
신용 정보	- 1974년 소비자신용법(The Consumer Credit Act 1974)
형사 기록	- 1997 경찰법(The Police Act 1997)
의료 정보	- 1988년 의료기록 접근에 관한 법률(The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1990년 건강기록 접근에 관한 법률(The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34) 황중성 외, 『국외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NCA I-RER-04080, 2004. 12, 13쪽.

2. 데이터보호법의 주요내용

1960년대에 일반적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나, 그 적용범위의 일반성을 이유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가³⁵⁾ 이후 입법 활동이 계속되어 1984년 7월 제정되어 9월 시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987년 11월 11일 모든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³⁶⁾

이후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규정으로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면서 EU 국가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24일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이하 EU지침)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EU회원국들은 이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를 단행하였는데³⁷⁾, 영국도 EU지침

35) 1961년 2월 14일 Mancroft경에 의해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단계에서 철회되었으며, 1967년 2월 8일 Alexander Lyon 의원에 의해 2차법안이 제출되었으며, 1969년 12월 26일 Brain Walden의원에 의해 3차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역시 성안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Kenneth Baker가 제안한 1969년 데이터감시법안(Data Surveillance Bill 1969), Windelsham 경이 제안한 1969년 개인기록법안(Personal Records(Computer) Bill 1969), Leslie Huckfield 가 제안한 1971년 개인정보규제법안(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Bill 1971) 등이 있다.

36) 동법은 당시 OECD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1980)』와 『개인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유럽평의회조약(1980)』 그리고 스웨덴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61쪽.

37) 동 EU지침은 EU가맹국으로 하여금 3년의 전환기간을 주어 EU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탈리아는 1996년12월31일『개인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개인 및 다른 주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일은 2001년

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1984년 데이터보호법을 전면개정³⁸⁾하여 1998년 데이터보호법³⁹⁾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데이터보호원칙(제 4조)’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데이터보호원칙의 내용

	내 용
제1원칙	개인데이터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Fairly and lawfully processed)되어야 한다.
제2원칙	개인정보는 명시된 1개 이상의 한정된 목적(limited purposes)을 위해서만 보유할 수 있다.
제3원칙	어느 목적을 위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당해 목적에

에 가서야 『연방데이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38) 1998년법은 1984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약80%는 그대로 두고 있다. 중요한 개정 내용은 첫째, 1984년법은 자동처리형식으로 수집된 개인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데 비해, 1998년 법원 데이터의 정의를 ‘관련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로 기록된 정보’라고 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정보까지도 원칙적으로 그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1984년법에서는 데이터보호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데이터관리자의 의무로 하고 있었는데, 1998년 법에서는 등록대신에 신고제도를 채용하였다. 셋째, 1984년 법에서 데이터주체는 자기에 관한 데이터의 사본을 청구할 수만 있었는데 1998년법에서는 처리된 데이터의 설명, 데이터처리 목적의 설명, 그 데이터의 수취가능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설명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데이터주체는 손해나 고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금지할 권리, 자동의사결정 배후에 있는 논리를 알권리, 마케팅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를 금지할 권리 등을 인정하여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4년법에서 데이터주체는 부적절 또는 미승인의 데이터개시의 결과로 입은 물질적 피해(damage)에 대해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1998년법에서는 범위반에 의해 발생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의 정신적 고충(distress)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39) 동법의 정식명칭은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규범의 수립을 위한 법률(An Act to make new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s, including the obtaining, holding, use or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이며, 6개의 장과 75개의 조문, 그리고 16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내 용
	적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것이어서는(adequate, relevant and not excessive) 아니된다.
제4원칙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의 것(accurate and up to date)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5원칙	어느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데이터를 당해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이상 보관해서는 아니된다(not kept for longer than is necessary)
제6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in line with your rights) 처리되어야 한다.
제7원칙	개인정보의무의 불법처리와 개인정보의 우연한 멸실, 파괴, 손상에 대비한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원칙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제3국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 또는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해서는 안된다(동법 4조).

이 법은 영국에서 개설한 데이터관리자나 영국이나 EEA국가에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영국에서 정보처리기구를 이용하거나 영국으로 정보를 이전할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제5조).

III. 독 일

1. 정보보호법제의 발전과정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 헤센주가 세계최

초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을 입법하였으며⁴⁰⁾,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연방정보보호법을 기초로 각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연방 및 각주에 개인정보보호관이 투입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설립되었다.

그 후 동 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⁴¹⁾,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적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정보보호법은 1991년 개정되었다. 이후 1995년 제정된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1년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작업으로 연방정보보호법은 간소화·간이화되었으며, 개별영역에 있는 100개가 넘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통합되게 되었다.⁴²⁾

2. 개인정보법제의 체계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 공적·사적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체계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보보호법과 각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동법 1조 3항). 주요한 특별법으로는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⁴³⁾과 통신서비스

40) 최초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법제는 스웨덴의 Datalag이며, 독일 헤센주의 입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초의 입법적 결과였지만, 당해 주에만 적용이 한정되어 국내 입법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1)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 인구조사법상의 규정이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하였다(BefGE 65, 1, 1983. 12. 5). 이는 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사적 영역 보호, 특히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첫 판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87쪽.

42) 황중성 외, 『국외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NCA I-RER-04080, 2004. 12, p. 171-2쪽.

43) 통신법의 적용범위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 및 수령하는 모든 기술적인 절차를 포함하며(동법 3조),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독일 기본법

정보보호법(Teledienstschutzgesetz, TDDSG)⁴⁴⁾을 들 수 있다.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특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만 해당영역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 즉, 공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법과는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연방정보보호법에 구속되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이 자동화되거나 서류모음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상기 법률이 적용된다.⁴⁵⁾

3.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독일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은 1977년 1월 27일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의 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그 후 1982년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교체 및 특히 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때문에 의회에 상정된 정보보호법초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많은 논란과 토의 끝에 마침내 1990년 연방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동법은 다시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맞추기위하여 2001년 5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⁴⁶⁾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며(1조 1항),⁴⁷⁾ 기본적으로 공적 기관⁴⁸⁾에 있어서는 모

10조)의 보호를 구체화하고 있다(동법 85조이하).

44) 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에는 텔레뱅킹, 전자우편 등의 개인통신들이 포함된다.

45) 황종성 외, 『국외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NCA I-RER-04080, 2004. 12, p. 162-164쪽.

46) Spios Simitis(Hsg.), Kommenta zum Bundesdatenschutzgesetz, 2003, 48f 참조.

47) 当節で引用している法文の日本語訳は、藤原静雄『改正連邦データ保護法(2001年5月23日施行)』(季刊行政管理研究, No. 99, 2002年9月)に掲載されている日本語訳を参考にしてている。

48) 연방의 공적 기관 및 연방법을 집행하는 주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든 개인 정보에 적용되고, 비공적 기관은 동 처리되는 개인 정보, 또는 정보 파일⁴⁹⁾내의 개인 정보에 한하여 적용된다.⁵⁰⁾

IV. 일 본

1. 신용정보 관련 입법 과정

일본은 신용정보체계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법령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신용정보는 자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도 대장성과 통상산업성의 통첩⁵¹⁾에 의하여 신용정보기관의 업무운영, 신용공여기관의 신용정보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신용관련 업종별 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가이드라인⁵²⁾으로 규율되어 왔고, 헌법 제21조와 제35조에서 간접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명시하였다.⁵³⁾

49) 동질적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액세스할 수 있어 분석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집적을 말한다.

50) 동 법 제1장에는 양쪽 부문에 공통의 규정이 제2 장에는 공적 기관 그리고 제3장에 비공적 기관에 관한 규정이 두어져 있다. EU 정보 보호지침이 양쪽 부문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것의 영향으로, 2001 년의 개정법에서는 양쪽 부문에 공통의 규정이 증가하였다.

51) 일본 대장성이 1986. 3. 4. 발표한 “金融機關等が信用情報機關を設置又は利用場閣の信用情報の取扱い等について”, 통상산업성이 1986. 3. 4. 발표한 “消費者信用情報機關等における消費者信用情報の管理等について” 1988. 4.에 공포한 “民間部分における電子計算機處理に係る個人情報保護について”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으로도 불린다. 社団法人 金融財政事情研究會, □□消費者信用の法務對策330 謹□□, 초판 (きんざい, 2000. 11), 67면 이하 참조.

52) 日本 クレジットライソ, 販賣信用取引における電子計算機處理に係る個人情報保護のためのガイドライソ, 그리고 消費者信用情報保護協會에서 만든 個人情報保護指針 등이 이에 해당한다. 消費者信用富務研究會, 『消費者信用の與信技術』, 초판, 經濟法令研究會, 1984. 4 참조.

53) 일본은 헌법 제21조에서 “집회·결사 및 언론·출판과 기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검열을 금지하고 더불어 법에 위배되는 어떤 종류의 비공개 의사소통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조사와 압류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가지는 주거, 문서 및 사유자산의 자유를 보장한다. 각각의 조사와 압류는 필요한 별개의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소관

그러나 2003년 이후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문제와 해외 정보이전을 제한하는 EU지침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정비하였는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⁵⁴⁾이 가장 대표적이며, 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⁵⁵⁾

일본의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 등을 정리한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⁵⁶⁾과 이 가이드라인의 관리를 위한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실무지침’⁵⁷⁾이 금융청에서 제정되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이념에 대해서 제3조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존중의 이념 아래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함에 따라 그 적절한 취급이 도모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6개장 5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본 법률의 목적 및 용어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과 제3장은 기본이념인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확보하기

법관에 의해 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54)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2003. 5. 30. 법률 제57호 제정, 최종개정 : 2003. 7. 16. 법률 제117호)

55)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의 심사회 설치법』,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에 해당된다.

56) 금융청 고시, 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004. 12. 6.)

57) 금융청 고시, 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安全管理措置等についての実務指針(2005. 1.)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제상의 조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지켜야하는 의무 및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잡칙에서는 적용 예외규정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업무,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장 벌칙에서는 주무대신의 시정 명령에 위반한 경우와 보고의무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부정취득이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목적 외 이용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제16조).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차별 유포에 따른 피해를 막는다는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행정기관의 정보 은폐에 악용되거나 정보보호 일변도로 치닫는 등 부작용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⁵⁸⁾⁵⁹⁾

3.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의 실시를 위해서 사업자에게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의 각 사항별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법에서 다소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재정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에 특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당사의 예금의 수용, ② 당

58) 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 『2007 국가정보보호백서』, 2007. 5, 345쪽.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악용 논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4759.html>

59)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제산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무지침으로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고객정보를 삭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의 여신 판단·여신 후의 관리, ③ 당사의 보험의 인수, 보험금·급부금의 지불, ④ 당사 또는 관련 회사, 제휴사의 금융상품·서비스의 판매·권유, ⑤ 당사 또는 관련 회사, 제휴사의 보험의 모집, ⑥ 당사 내부에 있어서의 시장조사 및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연구, ⑦ 특정의 금융상품·서비스의 구입에 있어서 자격의 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동의의 형식(제4조), 이용목적에 있어서의 제한(제5조),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의 확보(제9조), 제3자 제공의 제한(제13조) 등에 대해서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⁶⁰⁾

V.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이원적·영역별·부분적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원적이라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말하고, 영역별이라는 것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일반법이 없이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적이라 함은 민간부문에서 일반법이 없는 관계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⁶¹⁾

민간부문에 있어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의 근거 법령이며,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입법으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 외에 민간부문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라 함)」⁶²⁾이 있다.

60) 이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참조.

61)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대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4. 17쪽.

62) 정보통신부 소관법률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규율대상기관으로는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오프라인 민간사업자가 있으며, 보호대상으로는 규율대상기관이 수집하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적용되

공공부문의 일반법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정보법’이라 함)이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고,⁶³⁾ 이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의료보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관련 법 중 신용정보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5일 신용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경쟁 심화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욕구 증대와 프라이버시침해 소지의 증가 등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정보의 유통·이용의 촉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포함되어 있다.

는 규정들을 보면, 수집제한의 원칙으로서 ①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단,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 ②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 동의 필요, ③동의를 얻기 전에 사전에 일정 사항을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고지의무), ④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⑤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때 부모 동의 필요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참여의 원칙으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63)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개인정보시스템 내지 개인정보DB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보유범위 및 내부적 절차를 규율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제한을 가하며, 정보주체에게는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주민등록법, 호적법, 통계법, 학생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호적정보 등에 대해 개별입법이 되어 있다.

<표-7> 금융정보 이용 관련 주요 법률

법 률	주 요 내 용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오·남용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금융실명법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 정보 중 주로 수신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
공공정보법	국가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처리 원칙과 보호 방침을 규정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 내의 정보공유는 개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법률

자료 : 정재욱 외,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제 3 장 금융기관의 변화와 정보주체의 대응

제 1 절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I.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의 특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 그룹화 및 겸업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도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형화 및 그룹화를 통한 겸업화 정책과 더불어 펀드 상품(간접투자증권)의 판매 업무 및 보험상품의 판매 업무(보험대리점 업무) 등의 허용 등으로 은행의 비이자수익 부문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수익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증권산업이나 보험산업은 아직 은행산업만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자본시장 및 관련 증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⁶⁴⁾

64)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유사한 형태로 일본에서는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과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13일 국회에 상정되었고, 제164회 통상국회에서 성립되어 동년 6월 14일 법률 제65호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의 제명이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개정되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기본방향은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성 강한 금융상품을 널리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횡단적 제도, 이른바 투자서비스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증권거래법을 확대·재편한 것으로 종래 금융상품별로 존재해왔던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통합법으로서 마련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은 투자업무규제, 거래소, 벌칙·과징금, 공시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매수제도의 개선, 대량보유신고제도 등의 개선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선물 거래법과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가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증권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폐지되어 통합되었

II.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 지고,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과 특정분야 영업에 특화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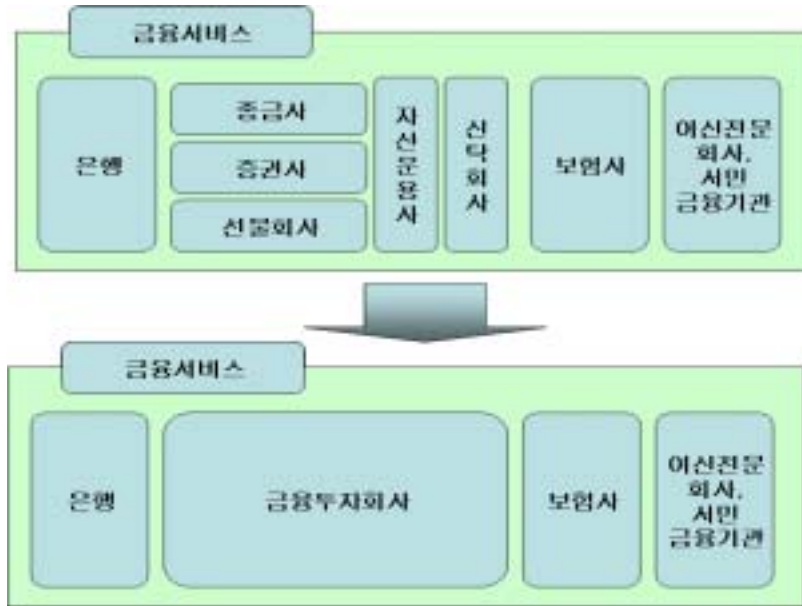
자본시장통합법의 중심에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중개·자산운용·투자자문·투자일임·자산보관 관리 등 가능한 형태의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은 자본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이를 통한 규모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대출을 기피하는 상태로 중소기업이나 생명기술(BT) 등 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 같은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해소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 금융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금융규제 대폭 완화에 비례하여 투자자 보호의 수준도 조정된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대거 출현으로 일반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피해를 볼 여지도 많아 이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상품을 권유할 때 반드시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으며,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존치하되 설명의무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품거래소법 등에도 금융상품거래법과 동일한 투자자보호규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藤瀬 裕司, 金融商品取引法等の改正と金融機関の業務, 金融法務事情, No. 1793, 2007. 2. 5. 25면.

<그림-1> 금융업의 체제 변화



자료 : 재정경제부, 2006.

Ⅲ. 금융기관의 변화추세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대형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관련 증권산업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⁶⁵⁾

65)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동법의 특징은 크게 1)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상호간 직접 겸영 허용,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등 업무 범위의 확대, 2)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계(functional regulation) 도입, 4) 투자권유자 제도 도입, 이해상충 방지 체계(firewall) 마련 및 발행공시의 적용 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 등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내 금융업인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을 내부 겸업(in-house)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자본시장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겸업 업무 영위는 강력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firewall)를 요구하고 있어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이유로 직접적인 겸업 이외의 방법인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직접 겸업 방식이 더 선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의 증권회사,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간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⁶⁶⁾

또한,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함께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의 자본시장 관련업(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의 직접적인 허용과 함께 은행의 겸업화도 계속될 것이고,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⁶⁷⁾

이 외에도 향후 금융산업의 큰 변화의 방향 중 또 다른 하나는 금융의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의 진전을 생각할 수 있겠다. 즉,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활성화시켜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기반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6) 고동원,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7. 7. 20. 28쪽.

67) 겸업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 형태를 통한 겸업화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겸업화의 정책 방향을 선택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고동원, 앞의 논문, 18쪽.

최근 협상이 완료되어 협정문 체결이 이루어진 한미 FTA도 금융산업의 국제화의 범위에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 금융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⁶⁸⁾ 이 중 금융분야의 협정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의 금융서비스에 대비하는 법률보안이 필요할 것인데, ‘국경간 금융서비스(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는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 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며, ‘신 금융서비스’의 허용은 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타국의 금융서비스를 자국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제 2 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I. 동의방법의 개선

1. 현행법상 동의의 형식과 범위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사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요건인 ‘동의’를 받는 방법은 동의 받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 opt-in 방식과 opt-out 방식으로 구분된다.

68) 금융분야에 대한 한미 FTA는 지난 2006. 5. 19.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 이후 수차례의 본 협상을 벌이며 큰 이견 없이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한미 FTA는 1년여의 협상 끝에 2007년 5월 25일 기본적인 협정내용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2007. 5. 25. 협정문)’으로 발표되었다.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2007. 5. 25일자 협정문)”, <http://www.mofat.go.kr/mofat/fta> 참조.

69) 김병태, “미국 금융법의 최근 동향과 국내법의 과제”, 『제2차 영미법제분과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7. 26, 71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미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하는 방식이 opt-in 방식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opt-out 방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중지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입법화되어 있다.⁷⁰⁾

opt-out 방식을 취할 경우 개인정보의 활용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opt-in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신용정보법 제23조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2. 동意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개선

개인신용정보 이용과 관련한 동의는 그 요건이 엄격할수록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저해하고, 그 요건이 완화될수록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내용을 정할 것인가가 입법목적 달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¹⁾

신용정보법은 동意的 형식으로 서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서식상의 동의 범위는 신용정보를 ① 신용

70)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고유활동이나 기능, 임무 등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목적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목적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공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71) 정성구, 앞의 논문, 97쪽.

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②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다.

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인 ‘신용정보감독규정’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예를 보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들이 빠져있어, 정보제공주체의 정보가 제공되는 자의 범위 및 이전목적 등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권고안)에서는 신용정보법 제23조, 제24조 관련 동의로 구분하여 좀 더 상세히 예시하고 있다. 이 권고안에서는 정보제공주체의 정보가 제공되는 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 이전 목적을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서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계약서, 약관, 신청서 등과 함께 교부되고 일괄해서 서명을 받거나,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은 권고안일 뿐이므로 현실적인 보호대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동의서를 받는 시기는 대부분 신규상품 계약시인데,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24조와 관련하여 모범규준 권고안과 같이 ‘제휴카드 신청시 해당카드 제휴기관에 정보를 제공’,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상품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포괄적인 동의서에 이들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II. 정정청구권 보장

개인신용정보의 정정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25조는 본인이 본인 정보의 정정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신용정보업자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중단, 삭제 또는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용정보업자등의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금감원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정지·삭제에 관한 조치를 연방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삭제의 경우를 보면, 개인 정보는 후술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 정보는 ① 해당 개인 정보의 수집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② ‘특별한 종류의 개인 정보(민감한 개인정보)’, 범죄행위 또는 질서 위반에 관한 정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정확성을 책임 기관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 ③ 개인 정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취급되고 있고, 당해 정보를 아는 것이 수집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④ 개인 정보가 업무상의 제공 목적으로 취급되며, 해당 정보의 최초 수집시기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사한 결과 더 이상의 지속적인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였다(35조 2항).

다음으로 이용정지(Sperrung)는 ① 삭제 ③의 경우에 법률, 약관 또는 계약상의 보존기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에 의해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③ 특수한 방법의 보존이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 또는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할 경우가 해당된다(35조 3항).

독일의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에 의하면, 고객으로부터의 개인정보의 이용 정지·삭제의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서도, 다른 법률에 근거해 정보를 일정기간 보

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삭제요청이 있어도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법의 경우도 법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부정확성이 문제되거나 책임 있는 기관이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정보주체의 삭제·이용중지 청구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의 정확성은 본인의 신용도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는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성의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제3의 책임 있는 기관에 맡김으로서 정보의 정확성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신용정보주체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Ⅲ. 동의철회의 실효성 확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신용정보무료열람권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시 고객의 동의 규정은 있으나 정보제공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이 실질적인 자기정보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고, 특히, 개인에게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할 예정이다.

즉, 금융회사 등은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 거부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도 갖추어야 하

며,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원활한 집증을 위해서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전 동의 요건이 면제되는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는 동의철회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⁷²⁾

한편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그 밖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이행이 곤란해지거나 제24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복합 금융상품의 개발, 기존 계약관계의 일정기간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동의철회 및 전화수신거부 신청을 제한한 바가 있다.⁷³⁾

72)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4조의 5(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23조 제1하에 의한 동의를 취득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그 밖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이행이 곤란해지거나 제24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3)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2006. 참조.

제 4 장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활용방안

제 1 절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의 공유

I.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

1. 문제제기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자원은 자금이라는 기존의 개념은 현대사회로 진행되면서 자금 외에 정보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간 업무제휴의 증가 등 영업방식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신탁이나 카드 등 일부 업무나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자회사화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경우 정보 이동이 필요하지만 기존 고객 동의 미획득시 이를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와 관련한 신용정보법상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고객의 개별적 사전동의 면제(개정안 제23조 제4항 3호)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⁷⁴⁾

대표적으로 동일한 금융지주회사 내에(금융그룹 계열사 간)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 간에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조치를 보면(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금융기관의 겸업화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가능토록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정보공유가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4) 박현일,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방법”, 계간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6. 6, 45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99년 GLBA 제정과정에서 opt-out 정책 실시 후 소비자들의 opt-out 행사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금융기관들이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 opt-out을 선택한 소비자도 많지 않은 점⁷⁵⁾은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⁷⁶⁾

2. 현행규정의 미비

현재 공동출자관계 또는 모자회사 관계 등 그룹 내 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전술한 대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자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는 본인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자신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자신의 영업에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물론 그룹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의 공유는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최소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사실을 알리고 해당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거래로 인해 지득한 정보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보주체 보호 장

75) GLBA 통과 이후 2001년 7월까지 4만여 금융기관에서 약 20억 매(1인당 평균 12개)의 프라이버시 안내를 배송하였으나, 8월 중순까지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권 행사 고객은 5% 수준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2005 자료 참조.

76) 이상제, “신용정보업 현안과 정책 대응 방향”, 2006 신용정보세미나, 전국은행연합회, 2006. 9, 36쪽.

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신용정보 공유 관련 입법례

(1) 미 국

미국의 경우 GLBA와 FCRA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GLBA는 그룹관련회사 간의 비공개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며,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 개인정보 공유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금융프라이버시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GLBA은 은행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은행업·증권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간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이들 업종이 서로 다른 관련회사 간에 정보공유라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파생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의 비공개적 개인정보의 기밀성과 안전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⁷⁷⁾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은 관련회사(affiliate)⁷⁸⁾와 관련 없는 제3자(nonaffiliated third party)⁷⁹⁾를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GLBA는 그룹 관련회사 내의 정보공유에 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FCRA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77) 맹수석,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7. 7. 20. 70쪽.

78) 관련회사(affiliate)란 해당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해당 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 및 해당 회사와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GLB법 제509조 (6)).

79) 관련 없는 제3자(nonaffiliated third party)란 금융기관과 모자관계나 동일지주회사에 속하지 아니한 그룹기업 이외의 회사, 즉 금융기관의 관련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GLB법 제509조 (5)).

따라서 GLBA는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회사간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는 항상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모든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비공개정보를 제3자의 비계열회사와 공유하는데 있어서 opt-out의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프라이버시통지에 관한 요건을 구비한 후에, ① 서면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통지할 것, ② 소비자에 대해 관련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제공에 거절할 수 있는 기회(opt-out)를 충분히 보장할 것, ③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대한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공개 개인정보를 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502조 (b)(1)). 다만 관련회사가 없는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엄격한 비밀준수의무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① 관련회사 이외의 금융기관과 공동마케팅을 하거나, ② 별도의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프라이버시통지만 하면 된다(동조 (b)(2)). 또 ③ 소비자에 의해 청구·승인된 거래(신용카드의 결제, 증권화 목적의 채권양도 등)를 완료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④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⁸⁰⁾ ⑤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⑥ 조직재편에 관련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통지도 요하지 않는다(동조 (e)).⁸¹⁾ 그러나, 이러한 GLBA에 의하면 그룹 내부에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affiliate sharing)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은행이 합병을 통해 인수한 금융업과 관계없는 계열사 고객의 정보까지 이전할 지라도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GLBA와 달리 FCRA는 소비자보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관련회사인가 비관련회사인가에 따라 규제내용이 달라진다.

80) 예컨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는 등, 또는 고객의 수익자나 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15 U.S.C. 제6802조).

81) 맹수석, 앞의 논문, 75쪽.

비공개 개인정보가 소비자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유는 제약받지 않고, 공동출자관계 또는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이에서의 정보의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이 행해지는 뜻을 명료하고도 현저하게 알리고, 제공 개시 전에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FCRA 제603조(e)).

(2) 일 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에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합병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사업승계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나 제3자 제공의 opt-out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⁸²⁾⁸³⁾

82) 第二十三条 (第三者提供の制限) 4. 次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当該個人データの提供を受ける者は、前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三者に該当しないものとする。

一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が利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内において個人データの取扱いの全部又は一部を委託する場合

二 合併その他の事由による事業の承継に伴って個人データが提供される場合

三 個人データを特定の者との間で共同して利用する場合であって、その旨並びに共同して利用される個人データの項目、共同して利用する者の範囲、利用する者の利用目的及び当該個人データの管理について責任を有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について、あらかじめ、本人に通知し、又は本人が容易に知り得る状態に置いているとき。

83) 第十六条 (利用目的による制限)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あらかじめ本人の同意を得ないで、前条の規定により特定された利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を超えて、個人情報を取り扱ってはならない。

2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合併その他の事由により他の個人情報取扱事業者から事業を承継することに伴って個人情報を取得した場合は、あらかじめ本人の同意を得ないで、承継前における当該個人情報の利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を超えて、当該個人情報を取り扱ってはな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法令に基づく場合

二 人の生命、身体又は財産の保護のために必要がある場合であって、本人の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특정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으며, 합병 기타 사업승계로 인한 개인정보의 취득의 경우에도 승계 이전의 당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당해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제16조).⁸⁴⁾

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유 및 목적 외 이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태도와 상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신용정보의 합리적인 공유방안

1. 계열사 공유범위의 기준정립

(1)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구분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보았고 결국, 신용정보법에 합병·영업양도 등 일정한 경우의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구분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意を得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き。

三 公衆衛生の向上又は児童の健全な育成の推進のために特に必要がある場合であって、本人の同意を得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き。

四 国の機関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又はその委託を受けた者が法令の定める事務を遂行することに対して協力する必要がある場合であって、本人の同意を得ることにより当該事務の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き。

84) 단, i) 법령에 근거한 경우, ii)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iii)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iv)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제공·이용자가 법인과 같은 조직체는 조직 내부에서의 개인신용정보 유통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단 등 법률상 단일한 개체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전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취급하면 되므로 그 내부에서의 정보교환을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의 관계로 볼 여지가 없는지, 또는 동일한 제공·이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⁸⁵⁾

미국 GLBA, FCRA의 경우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경우 예컨대,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간 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 내의 본·지점간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상의 이전으로 보지 않았으나 영업점에 국내외 구분이 없어지고, 금융권의 겸업이 허용되어 계열사에 대한 제한도 낮아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GLBA의 경우 ‘계열사’란 다른 회사를 관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또는 공통으로 관리되는 회사를 의미하며, ‘비계열사인 제3자’란 금융 기관의 계열사가 아닌 기관 또는 법인 조정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또는 공통 소유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하며, 그런 기관의 공동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계열사 기준

신용정보법상에는 계열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상세한 정의 규정을 볼 수 있다.

8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금융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3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 계열사의 기준으로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제13조 2. 『제3자』란,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및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본인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 법인 그 외의 단체를 묻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제2항 3호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①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인 경우, ②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인 경우에 따른 구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제2항 2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⁸⁶⁾ 제3조의 2에서 기업집단으로부터의

86) 제 3 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동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항 1호),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⁸⁷⁾

이와 관련하여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3조 제7호에서는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예로서 ① 당사 및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의 자회사, ② 당사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87)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유가증권 보고서등에 기재되어 있는 연결 대상 회사 및 지분법 적용 회사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은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계열사 기준과 함께 금융기관에 적용될 기준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계열사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여 일본 가이드라인의 예와 같이 정보공유허용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경과조치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 공유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간 실무에서 여러 가지 법해석 견해가 있어왔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이 보완된다면 기존에 공유하여왔던 금융기관 등 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3조 및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13조 제8호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법의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⁸⁸⁾의 규정에 의한 본인으로부터의 동의에 상당하는 동의가 있으면, 시행 후에 대해서도 계속 제3자에게로의 제공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에 공유기준에 관한 규정과 함께 위 가이드라인의 예와 같은 경과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금융기관의 합병 등의 경우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88) 제3자 제공에 대한 제한 규정이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

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은행의 경제적 기능의 중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건부 인가를 할 수도 있다(은행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

이러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신용정보의 공유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합병의 절차적 문제와 다른 법의 규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합병의 절차상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살펴보면, 금융기관 합병의 절차상 『상법』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상법 제232조),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상법 제527조의 5)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로⁸⁹⁾ 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 합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⁹⁰⁾

즉, 상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모될 것이며, 합병 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도 있고, 금융기관은 상시 당국의 감시 하에 있고, 합병은 당국의 인가사항이며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⁹¹⁾ 등을 간소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법의 규정을 보면, 금융기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망법의 경우에도 2007년 1월 26일 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89)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90)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최근 합병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의무 완화 즉, 일본 신회사법 제799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정관에서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시에는 개별 최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산업 규제개선 건의”, 상장, 2007. 6, 43쪽.

91) 정찬형·도제문, 『은행법』, 박영사, 2005, 178쪽.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별적인 동의가 아닌 이용자에 대한 통지로 족한 것으로 규정하였고(망법 제26조 제1항), 다만, 영업양수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망법 제26조 제3항).

따라서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서도 망법이나 금융기관의 합병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와 같이 간소화 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개정안 제23조 제7항)규정과 함께 우리나라 망법의 경우 및 일본 개인정보법 제16조의 경우와 같이 영업양수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3. 금융기관의 영업양도 등의 경우

은행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은행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영업양도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영업의 양도에는 은행의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영업의 양도를 비롯하여 극히 일부 업무의 양도·양수도 포함되며, 영업의 개념에는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가 합하여 이루어진 조직적·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의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 자체가 영업용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 할 경우, 신용정보가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로서 이전된다면 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기관 등이 그 보유의 자산이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신용정보는 당해 자산과 영업을 구성하는 무형자산으로서 함께 이전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합병의 경우와 같이 현행법상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상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적용되어 왔다. 예컨대, 영업·자산양도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는 그러한 영업, 자산에 포함된 일종의 종된 자산으로서, 주된 자산인 영업과 자신의 처분에 종속되고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자산의 종된 자산으로 취급하여 주된 자산이 실물자산의 처분에 종속하게 하는 것은 신용정보제공에 관한 동의요건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임대, 양도 후 반환, 일부 양도 등의 방법으로 쉽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약점이 있다는 견해 등⁹²⁾이 제기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합병의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은행법 시행령은 영업양수 인가시 심사기준에 있어서 합병의 규정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있어서는 은행의 해산 및 은행업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3항).

그리고 은행의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합병의 경우와 같이 은행이 보유한 다수의 지명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450조)에 대한 예외로, 개별채권자에게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간소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은행의 경우에는 다수의 지명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채권마다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각별로 통지를 해야 한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합병에 관한 규정

92) 정성구, 앞의 논문, 97쪽.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조), 이러한 합병의 간소화사항이 그대로 영업의 양도·양수에도 적용되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익을 제출할 것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기관의 영업이나 자산의 일부로서 이전될 경우 이를 영업의 중된 자산으로 보아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이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생각되며, 다만, 이러한 내용을 법해석의 문제로 남겨 둘 것이 아니라 합병의 경우와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거법을 신용정보법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제 2 절 자사상품 마케팅을 위한 신용정보 활용

I. 신용정보 이용목적 제한과의 관계

1. 문제제기

현재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가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을 정하고, 금융기관 등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⁹³⁾ 이와 관련한 판례⁹⁴⁾를 통하여서도 당해

93) 기존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유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 또는 장래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마케팅 목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설정’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하는 등의 논의가 있어왔으며, 과거 1회의 거래가 있었으나 이후 거래가 중단된 고객의 경우 ‘기존의 고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94) 기존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한 금융기관이 신용

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기관 간의 업무제휴 증가 등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금융기관 등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며, 금융소비자에게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따라⁹⁵⁾ 정부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소개 목적으로의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편 및 기타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은 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 하는 것”(개정안 제24조 제1항 1호)이 그 허용범위인데 여기에서도 ‘자사고객’,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명확한 제한을 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추진상 수월한 점, 정보의 활용목적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따르는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동의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의 반영으

정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2고단8719 판결).

9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면에 의한 동의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어(신용정보법 제23조) 고객 및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만을 허용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확대, 신상품 개발 등에 따라 이용 필요가 생겨서 동의를 얻으려 해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동의 획득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재욱 외,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95~96쪽 참조.

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기존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시 고객의 동의규정은 있으나 정보제공을 철회·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이 자기정보 결정권(self-determinism)을 행사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위와 같이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 소개를 허용할 경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게 될 것은 명백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의철회권 및 수신거부제도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면으로 접근해 보아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있어서 해당 개인신용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떤 경로로 타 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있어서 목적을 세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상거래 관계와 관계없는 판촉·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 없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제공·이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⁹⁶⁾

9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에 의하면,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같은 규정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신용정보 이용목적 관련 입법례

(1) 미 국

미국의 경우 GLBA에서 개인의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비공개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규정하여 계열관계 금융기관 간 및 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제3자 금융기관과의 개인 금융정보 공유 시는 고객 동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비계열관계 제3자 공유시는 고객의 거부 권한이 있으며, 금융기관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내 지침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계열관계라 함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 규정 및 연방준비은행법(Federal Reserve Act)에 근거하여 지분의 25% 초과 보유, 이사 선임권 및 경영 참여권 등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FCRA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에게는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열사간에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는 회사들은 그러한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소비자에게 주의와 함께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opt-out 절차의 의무화를 하고 있다.

(2) 영 국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의 경우 직접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처리를 금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광고나 마케팅물이 직접 전달되는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인 경우 데이터주체는 언제라도 서면을 통해 데이터관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직접마케팅을 위한 처리를 중단 또는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또 데이터관리자가 데이터주체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요청대로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데이터관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동법 11조).

(3) 독 일

1) 이용목적의 제한과 예외

독일 연방정보보호법도 다른 국가의 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 이용목적에 의한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동법 14조). 베를린주 정보보호관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는 opt-in 방식을 선호하는 한편, 사업자는 opt-out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⁹⁷⁾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거부의사를 나타낸 사람에 대해서도 다이렉트 메일(DM)을 송부하는 것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⁹⁸⁾

이 법에 있어서 허용사유를 살펴보면, (i) 자기의 업무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 정보를 수집, 축적, 변경 또는 제공 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28조 1항).⁹⁹⁾

(ii) 정보 수집시에 확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정보는 상기 (i) ② ③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제공 또는 이용되는 것이 허용되며(28조 2항), (iii)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허용되는 것이 있다(28조 3항).¹⁰⁰⁾

97) opt-in 방식은 가입을 결정하였을 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며, opt-out 방식은 가입을 거부하였을 때 정보가 삭제되는 방식이다.

98) 諸外国等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制度の運用実態に関する検討委員会, 報告書 資料 2-1, 2007年 3月, http://www5.cao.go.jp/seikatsu/kojin/index_en3.html, 79-80頁.

99) ① 그것이 본인과의 계약관계 또는 계약 유사한 신뢰 관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경우
② 책임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취급 또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에 본인의 보호에 적합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책임 기관이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다만, 책임 기관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취급 또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에 본인의 보호에 적합한 이익이 분명하게 우월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인 정보의 수집시 정보가 취급·이용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00) 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② 국가 및 공공의 안전하게 취한 위험의 방지 및 범죄 행위의 추구를 위해서 필

2) 개인정보 취득원 공개에 대한 대응

독일의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취득원의 공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i) 기업 그룹내에서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때, 고객으로부터 자회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의 취득원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모회사라고 회답하는 등 고객으로부터의 공개청구에 기본적으로 응하고 있다.

(ii) 광고를 수취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입수경위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DM 회사(소위 주소 브로커)로부터 송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뢰한 사업자가 주소를 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다만, DM회사에게 발송을 의뢰하였는가를 문의한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¹⁰¹⁾

(iii) 독일의 부정경쟁금지법(UWG)에는 전화, 팩스, 전자 메일에 의한 광고의 발송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금지되어 있으며, 우편을 통한 광고만이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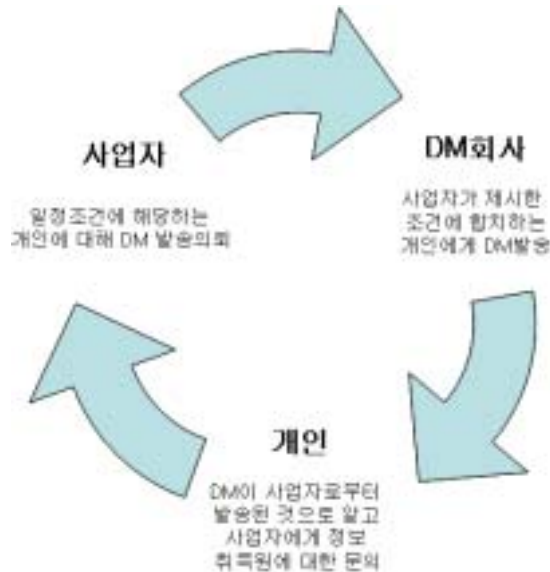
요한 경우

③ 선진, 시장 조사 또는 여론 조사의 목적 때문에, 인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a) 해당 인적 집단에서의 본인의 소속에 관한 기재, b) 직업, 부서 또는 업무의 명칭, c) 이름, d) 칭호, e) 학위, f) 주소 및 g) 생년 등의 한정된 항목에 대해 명부의 형태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정리된 정보가 취급되는 경우로, 본인이 제공 또는 이용하지 않게 하는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보호에 적합한 이익을 가진다고 추정할 이유가 없는 경우.

④ 연구시설의 이익을 위해서 학술 연구의 실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만, 연구계획의 실시에 대한 학술상의 이익이 목적 변경을 시키지 않는 것에 비해 본인의 이익에 현저하게 우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도한 지출을 요할 때에 한정한다.

101) 이러한 주소 브로커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입하는 것은 연방정보보호법 28조 3항 3호에 의해 허용된다.

<그림-2> DM회사를 통한 광고의 발송¹⁰²⁾



(4) 일 본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특정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제15조). 그리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 정보 제공시 정보이용자명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법 제23조 제1항, 가이드라인 제13조)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나 제3자 제공의 opt-out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①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102) 諸外国等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制度の運用実態に関する検討委員会, 前掲 報告書, 83面.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어서 개인 데이터 취급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는 경우, ② 합병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사업승계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③ 특정인과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로 취지, 공동이용의 항목, 이용범위, 이용목적, 정보관리 책임자를 본인에게 사전통지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경우 등 (법 제23조 제4항)이 있다.

II. 신용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최근 개인정보유출 및 신용정보를 이용한 사기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경우도 신용정보보호에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를 이용한 자사상품 광고의 허용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개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신용정보법 개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용정보로 분류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종류를 보면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도 많이 있으며(표-7 참조), 자사고객과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설립,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추세와 함께 신용정보를 오용·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더욱 많아 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신용정보법과 유사한 입법형태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를 보면, 사전 수신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망법 제50조 제1항) 사건거래관계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서(망법 제50조 제2항)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¹⁰³⁾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

예컨대, 사전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광고전송행위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게 되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보고 있으며,¹⁰⁴⁾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에서의 다양한 피해사례는 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허용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에도 반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의 본래의 제공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사고객에 대한 자사상품”의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인데, 앞에서 본 미국 GLBA의 계열사 기준과 같이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자사상품 마케팅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다소 강한 규제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용정보 유출피해 정도라든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104) 손해배상이 아닌 행정질서를 위반한 불법 광고전송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직접전송자인 대행업체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에서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현행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1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고객의 동의방법의 확대(휴대폰, ARS, 녹취 등)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정보화 사회가 안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보안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이 두 개념은 모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한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제정은 지체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의 겸영을 확대하는 자본시장통합법 통과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재 신용정보법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의 인프라구성을 위해 제정된 법인 만큼 현재로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형화되지 않은 개념들이 혼재되어 실무에서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보호와 활용을 겸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신용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넓은 적용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과 함께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여 처리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등에 따른 신용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여야 할 가치에 비해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

위내에서 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 수준을 일반적인 신용정보에 있어서는 서면동의를 비롯한 opt-in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opt-out의 기회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 자사의 마케팅을 위한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인 신용정보 주체의 피해 및 정보유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마케팅을 위한 자사의 범위, 자사의 상품 등의 한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을 경우 동의방법의 다양화 및 동의수준의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련한 문제 이외에도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신용정보가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있어 국가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래에는 정보검증장치¹⁰⁵⁾의 제도적 도입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신용정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정보에 대한 본인(개인 및 법인)의 열람권,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권 및 절차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05)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 제공기관을 알릴 의무가 없고, 신용정보회사가 정정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해당 신용정보를 조사·검증하고 있어 오류입증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정보 검증제도(Fair Credit Reporting Act)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의거하여 신용공여·채용·보험가입 등을 거부한 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① 당사자는 동 신용조사서를 60일 이내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② 정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동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새로운 신용조사서를 당사자와 최근의 신용정보 조회자에게 송부토록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제도보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응방향을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강화뿐만 아니라 공인신용평가기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경훈, “신용정보인프라 종합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11.

고동원, “금융기관 구조변화의 현황과 전망”, 『금융기관 구조변화에 따른 신용정보 법제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7. 7. 20.

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 『2007 국가정보보호백서』, 2007. 5.

국회사무처, 제170회 국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국회사무처, 94. 11. 30) 참조.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2006.

김동환,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주간 금융브리프, 2007. 6. 16.

김병태, “미국 금융법의 최근 동향과 국내법의 과제”, 『제2차 영미법 제분과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 7. 26.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김진수·이준규, 『기업인수·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김필규, “한미 FTA가 금융투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증권, 2007.

참 고 문 헌

- 맹수석, “미국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입법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07. 7. 20.
- 미래사회연구포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 방향 및 주요내용』, 2006. 11. 21.
- 박현일,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법”, 계간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 2006. 6.
- 신영수, 『은행합병의 규제법리』, 한국학술정보, 2005.
-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2007. 5. 25일자 협정문)”, <http://www.mofat.go.kr/mofat/fta>
- 이상제, “신용정보업 현안과 정책 대응 방향”, 2006 신용정보세미나, 전국은행연합회, 2006. 9.
-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대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4.
- 이지언·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7.
- 이호근, “신용정보법 개정을 대비한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언”, 2006 신용정보세미나, 전국은행연합회, 2006. 9. 12.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인프라로서의 신용정보관리제도”, 2006. 4.
-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6.
- 정재욱 외,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 정찬형 · 도제문, 『은행법』, 박영사, 2005.
- 최호상, “자본시장통합법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제”, 금융, 200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산업 규제개선 건의”, 상장, 2007. 6.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년 일본의 정보보호정책”, 2005. 11.
- 홍건기,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이슈”, 2006 신용정보세미나, 전국은행연합회, 2006. 9. 12.
- 황종성 외, 『국외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12.

< 영미문헌 >

“AFP Applauds Signing of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
Association for Financial Professionals.

http://www.afponline.org/pub/res/news/ns_20060929_cra.html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and the Privacy of Your Credit Report, [www.epic.org/
privacy/fcra](http://www.epic.org/privacy/fcra)

Spios Simitis(Hsg.), Kommenta zum Bundesdatenschutzgesetz, 2003, 48f

Christopher Wolf, “2005 Overview of the Gramm-Leach-Bliley Act” 828
PLI/PAT 200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4759.html>

참 고 문 헌

http://www.cdt.org/privacy/eudirective/EU_Directive_html

Robert H. Ledig, “Gram-Leach-Bliley Act Financial Privacy Provisions : The Federal Government Imposes Broad Requirements to Address Consumer Privacy Concerns”, Fried Frank. http://www.fffhsj.com/bancmail/bmarts/ecdp_art.htm

Trans Union Corp., v. FTC. No.00-1141, D.C.Cir. April 13, 2001.

<http://www.treasury.gov/offices/domestic-finance/financial-institution/cip/pdf/fact-act.pdf>

< 일본 문헌 >

中島信一郎・青木耕一, 『個人情報流出事故対応マニュアル』, ぎょうせい, 2007. 1.

諸外国等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制度の運用実態に関する検討委員会, 報告書 資料, 2007. 3.

桶口範雄, “金融・信用情報の保護と利用のり方-アメリカの場合”, 『ジュリスト』, No.1300, 2005.

藤瀬 裕司, 金融商品取引法等の改正と金融機関の業務, 金融法務事情, No. 1793, 2007. 2. 5.

社団法人 金融財政事情研究会, 『消費者信用の法務対策330講』, きんざい, 2000. 11.

個人情報保護法制研究会,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ぎょうせい, 2005.

藤原静雄, 『改正連邦データ保護法』, 季刊行政管理研究, No. 99, 2002. 9.

園部逸夫,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ぎょうせい, 2005.

IBI個人情報研究部會, 『個人信用情報と訴訟』, 文眞堂, 1993.

武井一浩・平林素子, 『會社分割の實務』, 商事法務研究會, 2000.

中野通明, 『M&A ジョイント・ベンチャー』, 日本評論社, 2006. 11.

http://www5.cao.go.jp/seikatsu/kojin/index_en3.html

부 록

(미국) Gramm-Leach-Bliley Act

15 USC, 제1절 제6801 - 6809조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개

조문

- 6801 비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 (a) 프라이버시 의무 정책
 - (b) 금융기관 보호 (safeguard)
- 6802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 사항
 - (a) 통지 요구
 - (b) Opt out
 - (c) 정보 재사용에 대한 제한
 - (d) 마케팅 목적을 위한 계좌번호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
 - (e) 일반적 예외
- 6803 기관 프라이버시 정책의 공개
 - (a) 공개의 요구
 - (b) 포함되는 정보
- 6804 규칙 제정
 - (a) 규율 당국
 - (b) 예외기관
- 6805 집행

부 록

- (a) 일반적 사항
 - (b) 제6801조의 집행
 - (c) 주법의 결여
 - (d) 정의
- 6806 다른 조항들에 관련된 사항
- 6807 주법에 관련된 사항
- 6808 금융 계열회사 내에서의 정보 공유에 대한 연구
- (a) 일반적 사항
 - (b) 협의
 - (c) 보고
- 6809 정의

제6801조 비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a) 프라이버시 의무 정책

의회의 정책은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고객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안전과 비밀을 보호할 확인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b) 금융기관 보호

제6801조 (a)항에 있는 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6805조 (a)항에 기재된 각 기관 또는 당국은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보호에 관련한 관할권에 의거한 금융기관들을 위해 적절한 기준들을 세우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고객 기록과 정보의 안전과 비밀의 보장

- (2) 기록들의 안전 또는 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이나 위협에 대항하는 보호
- (3) 어떤 고객에게라도 손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과 사용에 대한 보호

다른 조문들에 참조되어 있는 조문

본 조는 제6803, 6805조에 참조되어 있다.

주의: Pub. L. 106-102, title V, Sec. 510, Nov. 12, 1999, 113 Stat. 1445는 이렇게 정하고 있다 : “본 절(본 절을 집행하고 이 법의 제1681조를 수정하는 Pub. L. 106 102의 title V의 subtitle A(sec. 501 510))은 제504조(a)(3) (15 U.S.C 6804)에 규정되도록 요구되어 있는 규칙들의 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될 것이다. 다만 다음은 예외이다:

- (1) 더 후일이 제5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 (2) 제504조(15 U.S.C. 6804)와 제506조(이 법의 제6806조를 집행하고, 제1681조를 수정하는)는 집행 시점(1999년 11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6802조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 사항

(a) 통지 요구

이 편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들이 이 장의 제 6803조를 따른다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관련 없는 제 3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관련자를 통해 어떤 비공개 개인정보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b) Opt out

(1) 일반적 사항

금융기관은 비공개 개인정보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A) 금융기관이 그러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이 법의 제68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에 의해 허가된 전자 또는 다른 형식 또는 서면으로 고객에게 명확하게 공개한 경우
- (B) 고객이 그러한 정보가 처음에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 (C) 고객이 어떻게 비공개 옵션을 취할 수 있는지의 설명을 받은 경우

(2) 예외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정보의 제공을 확연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가 그러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적인 동의를 제3자와 맺은 경우, 본 조항은 금융기관이 관련 없는 제3자가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서비스와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한 기능들과 서비스들은 그 금융기관 자체의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의 마케팅 또는 이 법의 제68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에 의해 부과된 요구 사항들을 따르는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 사이에 맺어진 협약에 따라서 제공되는 금융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c) 정보 재사용에 대한 제한

이 편에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서 비공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관련 없는 제3자는 정보

를 제공받은 제3자와 관련 없는 다른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정보를 받는 제3자의 관련자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 그 금융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경우는 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

(d) 마케팅 목적을 위한 계좌번호 정보 공유에 대한 제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텔레마케팅, 직접적인 메일 마케팅, 전자 메일 등을 통한 마케팅에서의 사용을 위한 계좌 번호, 접근 번호의 비슷한 형식, 신용카드 구좌의 접근 코드, 또는 고객의 거래 구좌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e) 일반적 예외

본 조 (a)와 (b)항은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

(1) 고객에 의해 허가되거나 요청된 거래를 수행, 관리, 또는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과 관련된 사항

(A) 고객에 의해 요청, 허가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처리함

(B) 사적 라벨 신용카드 프로그램 또는 그 실체를 대신하는 신용의 연장의 일부로서의 다른 실체 또는 그 금융기관과 함께 고객의 계좌를 유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

(C) 고객의 거래와 관련된 유사한 거래, 부차적인 시장 판매 (서비스 제공 권리들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 또는 제안된 자금조달

(2) 고객의 동의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

(3) (A) 고객, 서비스 또는 상품 또는 거래 이하와 연관된 금융기관의 기록의 안전과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B)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사기, 허가되지 않은 거래들, 청구들, 또는 다른 부채를 막거나 이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C) 요구된 기관적인 위험

조정 또는 고객 분쟁이나 문의 해소를 위해서; (D) 고객에 관련해서 법적인 또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E) 고객을 대신해서 수탁자 또는 대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 (4) 보험료 자문 기관들, 보증 펀드 또는 기관들, 금융기관의 해당되는 평가 기관들, 산업 표준들 그리고 기관들의 변호사들, 회계사들 그리고 감사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 (5) 법의 다른 조항들 아래 구체적으로 요구되거나 허가되는 한 또는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3401 et seq.)과 일치할 때에는, 법 집행기관들(연방 기능 규정자, 표제 31 제53장 II 그리고 공공법 91 508(12 U.S.C. 1951 1959)의 표제 I의 제2장에 따른 재무 장관, 국가 보험기관 또는 연방 무역 위원회를 포함함), 자치 단체들, 또는 공공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 (6) (A)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이하 참조)에 따른 고객 보고 기관에게, 또는 (B) 고객 보고 기관에 의해 보고된 고객 보고로부터
 - (7) 비즈니스나 운영 단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제안된 또는 실제적인 판매, 합병, 양도, 또는 교환과 관련하여 (만약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개가 그런 비즈니스 또는 단위의 고객들에 만 관한 것이라면)
 - (8) 연방, 국가 또는 지역 법들, 규칙들, 또는 다른 적용될 만한 법적인 요구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방, 국가 또는 지역당국에게 알맞게 허가된 민사, 형사, 또는 조정심사, 소환장 또는 호출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의해 인가된 검사, 수탁 또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조정 당국들 또는 사법적인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 (Pub. L. 106 102, title V, Sec. 502, Nov. 12, 1999, 113 stat. 1437.)

본문의 참고 문헌

(a)(c)항에서 인용된 본 절은 원문의 “본 장”에 있다. “본 장”은 A장 (제501조 이하 참조) of title V of Pub. L. 106 102, Nov. 12, 1999, 113 Stat. 1436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본 절을 제정하였고, 이 법의 제 1681조를 개정하였다.

the Code에 의한 A장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 Tables를 보기 바람.

(e)항(5)호에 나와 있는 1978년의 금융프라이버시에의 권리법(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은 개정된 바와 같이, 표제 12(타이틀 12), 은행들과 은행업(Title 12, Banks and Banking)의 제35장(제1951조 이하 참조)라고 일반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title XI of Pub. L. 95 630, Nov. 10, 1978, 92 Stat. 3697이다. the Code에 의한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표제 12의 제3401조에 나와 있는 Short Title과 Tables를 보기 바람.

(e)항(5)호에 나와 있는 공공법(Public Law 91 508)의 표제 I의 제2장은 일반적으로 표제 12, 은행들과 은행업(Title 12, Banks and Banking)의 제21장(제1951조 이하 참조)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Pub. L. 91 508, Oct. 26, 1970, 84 Stat. 1116의 표제 I의 제2장(제121 129조)이다. 법전(the Code)에로의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을 보기 바람.

(e)항(6)호(A)에 나와 있는 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은 Pub. L. 91 508, title VI, Sec. 601, Oct. 26, 1970, 84 Stat. 1127에 의해 추가되어, 개정되고, 이 법의 제41장 III절(제1681조 이하 참조)로 일반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Pub. L. 90 321의 표제(타이틀) VI이다. the Code에 의한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이 표제의 제1601조에 나와 있는 짧은 타이틀 주석을 보기 바람.

다른 조문들에 참조되어 있는 조문

이 조문은 이 법의 제6803, 6804, 6809조에 참조되어 있다.

제6803조 기관 프라이버시 정책의 공개

(a) 공개의 요구

고객과 고객 관계를 설정하는 기간 동안, 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금융기관은 이 법의 제68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이 허락한 서면, 전자 문서, 또는 다른 형식으로 고객들에게 그 금융기관의 정책들과 관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책들과 관례들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들을 포함하고, 이 법 제6802조에 일치하도록, 계열사와 비계열사인 제3자들에게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함
- (2) 더 이상 금융기관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함

(3) 고객들의 비공개 개인정보들을 보호

이 법의 제68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에 맞게 이런 공개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b) 포함되는 정보

본 조 (a)항에 요구되었던 공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 법의 제6802조 (e)항과 일치하여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닌 비계열사의 제3자들에게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금융기관의 정책들과 관례들. 그리고 정책들과 관례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이 법의 제6802조 (e)항에 응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보가 공개된 또는 공개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종류
 - (B) 그 금융기관의 고객이 더 이상 아닌 사람들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 기관의 정책과 관례들
- (2) 금융기관에 의해 수집되는 비공개 개인정보의 종류들
 - (3) 이 법의 제6801조에 준하여 금융기관이 비공개 개인정보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지속하는 정책들
 - (4) 만약 있다면, 이 법의 제1681조a(d)(2)(A)(iii)에서 요구되는 공개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3, Nov. 12, 1999, 113 Stat. 1439.)

다른 조문들에 참조되어 있는 조문

본 조는 이 법의 제6802조에 참조되어 있다.

제6804조 규칙 제정

(a) 규율당국

(1) 규칙 제정

연방 은행 기관들, 국가신용연합행정부(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재무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연방무역위원회(the Federal

부 록

Trade Commission)는 국가보험위원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이 정한 주(State) 보험기관들의 대표자들과 적절한 협의 후, 이 법 제6805조의 관할권에 준한 금융기관들에 관하여 본 절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각각 규정해야 한다.

(2) 조정, 일치, 그리고 동등

규칙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의 문단에 요구된 각 기관들과 부처들은 그 규칙들이 다른 기관들과 부처들이 규정한 규칙들과 일치하고 동등한가를 최대한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부처들과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3) 과정과 발행기간

이런 규칙들은 표제 5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고, 1999년 11월 12일에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된 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b) 예외기관

본 절의 목적들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면, 본 조 (a)항에 규정된 규칙들은 이 법 제6802조 (a)항부터 (d)항까지 적용되었던 추가 예외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4, Nov. 12, 1999, 113 Stat. 1439)

다른 조문들에 참조되어 있는 조문

본 조는 이 법의 제6802,6803, 6809조에 참조되어 있다.

제6805조 집행

(a) 일반적 사항

이하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은 다음과 같이 적용 가능한 법 아래 금융기관들과 그들의 관할권 아래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련하여 연방 기능 단속 기관들(Federal functional regulators), 주(State) 보험 당국자들, 연방 무역 위원회에 의해 집행된다.

(1) 표제 12의 제1818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A) 국립은행들, 외국은행의 연방 지사들과 기관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의 종속 기관들(단, 주식 중개인들, 주식 판매인들, 보험업자들, 투자 회사들, 투자 조언자들은 제외)은 환율 감사국(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 의해

(B) 국립은행들 외의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회원은행들, 외국은행들의 지사들과 기관들 (단, 외국은행들의 연방 지사들, 연방 기관들, 보험에 가입한 주(State) 지사들은 제외), 외국은행들이 가지고 조정하는 상업적인 대여 회사들,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의 제25조 또는 25A 아래 작동하는 기관들 (12 U.S.C. 601 이하 참조, 611 이하 참조), 그리고 비은행 종속 또는 계열회사들과 은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단, 주식 중개인들, 주식 판매인들, 보험업자들, 투자 회사들, 투자 조언자들은 제외)은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에 의해

(C) 연방 예금 보험 회사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보험에 가입한 은행들, 보험에 가입한 외국은행들의 주(State) 지사들이나 종속 회사들 (단, 주식 중개인들, 주식 판매인들, 보험업자들, 투자 회사들, 투자 조언자들은 제외)은 연방 예금 보험 회사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이사회에 의해

- (D) 연방예금보험회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보험에 가입한 예금들의 저축 연합들과 이 연합들의 종속 회사들(단, 주식 중개인들, 주식 판매인들, 보험업자들, 투자 회사들, 투자 조언자들은 제외)은 저축 금융 기관 감독청(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청장에 의해
- (2) 연방신용연합법(the Federal Credit Union Act) (12 U.S.C. 1751 이하 참조)에서는, 연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신용기관과 그 신용기관의 종속 기관들은 국가신용연합행정부(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의 이사회에 의해
- (3) 1934년의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15 U.S.C. 78a 이하 참조)에서는, 모든 주식 판매인이나 주식 중개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 (4) 1940년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5 U.S.C. 80a 1 이하 참조)에서는, 투자회사들은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 (5) 1940년의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15 U.S.C. 80b 1 이하 참조)에서는, 이 법의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 조언자들은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 (6) 주정부보험법 (State insurance law)에서는, 보험을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 법의 제6701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주의 적용 가능한 주정부 보험 기관에 의해
- (7) 연방무역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5 U.S.C. 41 이하 참조)에서는, 본 조의 1.부터 6.까지 아래의 어떤 기관이나 부서의 관할권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나 금융기관은 연방 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b) 제6801조의 집행

(1) 일반적 사항

2항에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조의 (a)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처들과 기관들은 이 법의 제6801조 (b)항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표제 12의 제1831조 p 1 (a)항에 응하여 규정된 표준들이 본 조에 응하여 실행되는 방법으로, 또 최대한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2) 예외

본 조의 (a)항 (3),(4),(5),(6),(7)호에 명시되어 있는 부처들과 기관들은, 본 조 (a)항의 각각의 관할권에 준하는 금융기관들과 사람들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이 법의 제6801조 (a)항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들을 실행해야만 한다.

(c) 주 법의 결여

만약 주 보험기관이 본 절을 이행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 기관은, 표제 12의 제1831조 x(g)(2)(B)(iii)에 응하여, 표제 12의 제1831조 x(a)의 연방은행기관이 규정한 보험 고객 보호 규칙들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할 것이다.

(d) 정의들

본 절에 정의되지 않거나 아니면 표제 12의 제1813조에 정의된, 본 조 (a)항 (1)호에 사용된 용어들은 표제 12의 제3101조에 나온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5, Nov. 12, 1999, 113 Stat. 1440.)

본문의 참고 문헌들

(a)항 (1)호(B)에 참조된 연방준비법(The Federal Reserve Act)의 제25조는 은행과 은행업, 표제 12의 제6장 I절(제601조 이하 참조)로 분류되어 있다. 연방준비법의 제25조A는 표제 12의 제6장의 II절(제611조 이하 참조)로 분류되어 있다.

(a)항 (2)호에 참조된 연방신용연합법(The Federal Credit Union Act)은 은행과 은행업, 표제 12의 제14장(제1751조 이하 참조)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법(act June 26, 1934, ch. 750, 48 Stat. 1216, 개정된 바와 같이)이다.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표제 12의 제1751조와 Tables를 참고하라.

(a)항 (3)호에 참조된 1934년의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이 법의 제2장B(제78조 a 이하 참조)로 대체로 분류되는 법(act June 6, 1934, ch. 404, 48 Stat. 881, 개정된 바와 같이)이다. the Code에 의한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이 법의 제78조 a를 참고하라.

(a)항 (4)호에 참조된 1940년의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은 이 법의 제2장D의 I절(제80조 a 1 이하 참조)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법 (act Aug. 22, 1940, ch. 686, 54 Stat. 789, 개정된 바와 같이)의 표제 I이다. the Code에 의한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이 법의 제80조 a 51을 참고하라.

(a)항 (5)호에 참조된 1940년의 투자자문법(The Investment Advisers Act)은 이 법의 제2장 D의 II절(제80조 b 1 이하 참조)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법(act Aug. 22, 1940, ch.686, 54 Stat. 847, 개정된 바와 같이)의 표제 II이다. the Code에 의한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이 법의 제80조 b 20를 참고하라.

(a)항 (7)호에 참조된 연방무역위원회법(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이 법의 제2장의 I절(제41조 이하 참조)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법 (act Sept. 26, 1914, ch.311, 38 Stat. 717: 개정된 바와 같이)의 표제 II이다. the Code에 의한 이 법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이 법의 제58조를 참고하라.

다른 조문들에 참조되어 있는 조문

본 조는 이 법의 제6801, 6804, 6807조에 참조되어 있다.

제6806조 다른 조항들에 관련된 사항들

(a)와 (b)항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이 장의 어떤 것도 공정신용보고법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1681 이하 참조)의 집행을 바꾸거나, 제한하거나, 대신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또한, 그 법(15 U.S.C. 1681a)의 제603조에서, 정보가 거래인지 또는 경험 정보인지에 대해서도, 본 장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어떤 추론도 만들 수 없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6(c), Nov. 12, 1999, 113 Stat. 1442)

본문의 참고 문헌

본문에 참조된 (a)와 (b)항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들은 이 법의 제 1681조를 개정했던 Pub. L. 106 102의 제506조 (a)와 (b)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들을 의미한다.

본문에 참조된 본 장은 “이 법”의 원문에 있었다. 본 장은 본 장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제1681조를 개정한 Pub. L. 106 102, Nov. 12, 1999, 113 Stat. 1436의 표제 V(개정된 바와 같이)를 의미한다. the Code에 의한 표제 V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을 참고하라.

본문에 참조된 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Reporting Act)은 Pub. L. 90 321의 표제 VI이다. 이 법은 이 법의 제41장의 III절(제1681조 이하 참조)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Pub. L. 91 508, title VI, Sec. 601, Oct. 26, 1970, 84 Stat. 1127(개정된 바와 같이)에 의해 증가되었다. the Code에 의한 표제V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이 법의 제 1601조에 나온 짧은 제목 주석을 참고하라.

제6807조 주 법에 관련된 사항들

(a) 일반적 사항

본 절과 본 절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들은 모든 주에서 시행 중인 그 어떤 법령, 규칙, 명령, 또는 해석을 바꾸거나, 영향을 끼치거나, 폐지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이런 법령, 규칙, 명령, 또는 해석이 본 절의 조항들과 불일치하는 정도는 예외이며, 이 예외도 불일치하는 정도까지만 허가 되어야 한다.

(b) 주 법 하에서의 더 큰 보호

본 조의 목적들을 위해서, 주 법령, 규칙, 명령 또는 해석은 본 절의 조항들과 불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연방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결정된바와 같이, 불평을 시작한 사람 또는 그 불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명령 신청을 내거나 또는 다른 관련된 자의 요청에 의해 이 법의 제6805조 (a)항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관청과의 협의 후에 그러한 법령, 규칙, 명령 또는 해석이 가지고 있는 보호가 본 절에서 제공되는 보호와 본 절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들보다 큰 경우는 말이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7, Nov. 12, 1999, 113 Stat. 1442.)

본문에서의 참고 문헌들

본문에 참조된 본 절은 본 절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제1681조를 개정한 Pub. L. 106 102, Nov. 12, 1999, 113 Stat. 1436의 표제 V의 A장(제 501 510조)을 의미하는, 본래의 “이 법”에 있었다. the Code에 의한 A장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을 참고하라.

제6808조 재정적인 계열 회사 내에서의 정보 공유에 대한 연구

(a) 일반적 사항

연방 기능 조정자들과 연방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와 함께 재무장관은 금융기관들과 그 계열사들 사이의 정보 공유 관례들에 대한 연구를 실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계열사들 또는 비계열사 제3자들과 비공개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
- (2) 그런 정보를 위한 안전 보장의 정도와 적합성
- (3) 정보 공유가 고객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
- (4) 금융기관들과 계열사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의 유익함
- (5) 고객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의 유익함

부 록

- (6) 고객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현재 법들의 적합성
- (7) 현행 법 아래서 금융기관 프라이버시 정책과 프라이버시 권리 공개의 적합성
- (8) 가입과 이탈을 포함하여 계열사들과 비계열사인 제3자들과 비밀 정보를 못 공유하도록 고객들이 지도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하는 여러가지 접근들의 타당성
- (9) 구체적인 용도들을 위해서 정보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나 또는 정보가 공유될 용도들을 지도하도록 고객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b) 협의

본 조의 (a)항에 요구된 연구를 실행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재무장관은 국가보험위원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에 의해 지정된 주보험기관들의 대표들과 금융 서비스 산업, 고객 단체들, 프라이버시 그룹들, 그리고 일반 대중의 다른 대표들과 협의해야 한다.

(c) 보고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전에, 재무 장관은 본 조의 (a)항 아래 요구된 연구의 결론들과 판결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를 적당한 입법, 행정 활동들에 대한 그러한 추천들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8, Nov. 12, 1999, 113 Stat. 1442.)

제6809조 정의들

본 절에서 사용된 바대로:

(1) 연방 은행 관청

“연방 은행 관청” 이 용어는 표제 12의 제1813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연방 기능 조정자

“연방 기능 조정자” 이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이사회
- (B) 환율 감사국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C) 연방예금보험조합(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이사회
- (D) 저축금융기관 감독청 (The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청장
- (E) 국가 신용연합행정처위원회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Board)
- (F) 증권거래위원회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3) 금융기관

(A) 일반적 사항

“금융기관”이 용어는 표제 12의 제1843조(k)에 설명된 바대로 금융 활동들에 종사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B) CFTC 규칙에 해당하는 사람들

(A)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이 용어는 선물거래법 (The Commodity Exchange Act: 7 U.S.C. 1 이하 참조)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할권에 따르는 그 어떤 금융 활동에 관련한 사람들이나 기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C) 농장 신용 기관들

(A)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이 용어는 연방농업융자법인(The

Federal Agricultural Mortgage Corporation) 또는 1971년의 농장신용법 (The Farm Credit Act: 12 U.S.C. 2001 이하 참조) 아래 작동되고 인가된 다른 기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D) 다른 보조 시장 기관들

(A)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이 용어는 이 법의 제6802조(e)1.C.에 언급된 거래들에 구체적으로 종사하는 의회에 인가된 기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 기관들이 비계열사인 제3자에게 비공개 개인정보를 팔거나 양도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4) 비공개 개인정보

(A) “비공개 개인정보”, 이 용어는 개인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의미한다.

(i) 금융기관에게 고객에 의해 제공된

(ii) 고객과의 거래 또는 고객을 위하여 실행된 서비스에서 나온

(iii) 또는 금융 기관에 의해 습득된

(B) 이 법의 제6804조 아래서 규정된 규칙들에 의해 용어가 정의된 바와 같이 이런 용어는 공공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는 -

(i) 공공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 이외의 어떤 비공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진 어떤 목록, 묘사, 또는 고객들의 다른 배치 (그리고 그것들에 관련하는 공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ii) 어떤 비공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얻어진 어떤 목록, 묘사 그리고 고객들의 다른 배치 (그리고 그것들에 관련하는 공공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5) 비계열사인 제3자

“비계열사인 제3자” 이 용어는 금융 기관의 계열사가 아닌 기관 또는 법인 조정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또는 공통 소유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하며, 그런 기관의 공동 직원을 포함한다.

(6) 계열사

“계열사”, 이 용어는 다른 회사를 관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또는 공통으로 관리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7) 실시하고, 관리하고, 또는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실시하고, 관리하고, 또는 집행하는데 필요한”, 이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이 공개는 그 거래, 또는 그 거래가 일부인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금융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고객의 구좌를 기록, 서비스 또는 유지하고, 또는 그 거래, 그 거래가 일부인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이익들과 요구들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데 요구되거나 또는 필요한 적절한 방법, 기록이다. 이 거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i)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나 제품의 위치와 가치에 대한 정보, 그 거래의 다른 기록, 확증, 진술을 제공하는 것

(ii) 금융 기관 또는 다른 삼자에 의해 제공되는 거래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인정함 또는 이자 수익의 발생

(B) 그 공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거래를 실행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금융 기관들의 권리들을 강화하는데 필요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한 합법적이고 적당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C) 그 공개는 고객의 요구에 승낙하여 서명하는 보험, 또는 고객의 보험에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한 합법적이고 적당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예금 관리, 보고, 조사, 또는 사기나 문서 위조의 방지, 고가의 지불 처리 보험 요구들의 처리, (이용 리뷰 활동들을 포함하는) 보험 이익들의 관리, 리서치 프로젝트의 참가, 또는 연방 또는 주정부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바 처럼

(D) 공개는 다음과 관련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한 합법적이고 적당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i)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다른 지불 카드, 수표 또는 예금 계좌 번호, 또는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하여 요구되거나, 차변되거나, 또는 지불된 돈의 허가, 확정, 청구, 처리, 제거, 양도, 조정, 수금

(ii) 수취 계정, 예금 또는 이자들의 양도

(iii) 차변, 대변, 또는 다른 지불 정보의 감사

(8) 주정부 보험 기관

“주 정부 보험 기관”, 이 용어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주의 주정부 보험 기관을 의미한다.

(9) 고객

“고객” 이 용어는 개인, 가정, 또는 가구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융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얻는 개인을 의미한다.

(10) 공동 동의

“공동 동의”, 이 용어는 금융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승인하고, 후원하는 두 개 이상의 금융 기관 사이의 공식 계약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제6804조에 규정된 규칙들에 정의된 바에 의한다.

(11)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설정기간”, 이 용어는 이 법의 제68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에 의해 정의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자본을 공급기 위해 고객들에게 신용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이 용어가 고객과의 신용 관계를 설정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Pub. L. 106 102, title V, Sec. 509, Nov. 12, 1999, 113 Stat. 1443.)

본문에서의 참고 문헌들

(3)(B)항에 언급되어 있는 선물거래법(The Commodity Exchange Act)은 개정된 바와 같이, 농업, 표제 7으로 (제1조 이하 참조)의 제1장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법령 Sept. 21, 1922, ch.359, 42 Stat. 998이다. the Code에 의한 법령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표제 7의 제1조를 참고하라.

(3)(C)항에 언급되어 있는 1971년의 농장신용법(The Farm Credit Act)은 개정된 바와 같이, 은행업과 은행, 표제 12 (제2001조 이하 참조)의 제23장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법령 Pub. L. 92 181, Dec. 10, 1971, 85 Stat. 583이다. the Code에 의한 법령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Tables과 표제 7의 제1조를 참고하라.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제 1 조 목적(법 제1조 관련)

1.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 5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2003년 정령 제507호.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2004년 4월 2일 결정. 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하여 금융청 소관분야 및 법 제36조 제 1항에 의해 지정을 받은 분야(이하 「금융분야」라고 한다)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해서 실시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성질 및 이용 방법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강구할 수 있는 조치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꾀하기 위하여 지침으로서 정하는 것이다.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각 승인된 개인정보보호단체(법 제37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각 사업의 실태 등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자율적인 룰로서 정하고,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등에 준수시키는 것과 스스로가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누설, 부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등을 근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금융분야에 있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법 제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에 있어서도,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성질 및 이용 방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서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등이 특히 엄격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노력 조치)을 「업무로 한다」, 「적절하다」, 「바람직하다」의 표현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정의 등 (법 제2조, 시행령 제1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생년월일, 그 외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어 그것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취급하는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동시에 유족 등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되는 것에 유의한다.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이며, 특정의 개인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십음순에 색인을 교부해 늘어놓을 수 있는 고객 카드 등, 개인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써 특정의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을 이룬 것이며, 목차,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색인, 부호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검색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수」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 하는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특정 개인의 수」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어도 그것을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 하는 특정 개인의 수를 「개인의 수」에 산입하게 된다.

4. 「개인데이터」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으로부터 기록매체에 다운로드된 것 및 지면에 출력된 것(또는 그 카피)도 포함된다.

5. 「보유 개인데이터」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개시,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 이용의 정지, 소거 및 제3자에게로의 제공 정지의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개인 데이터이며, 공개됨으로써 공익 기타 이익이 해쳐지는 것, 또는 6월 이내에 소거(갱신하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공개됨으로써 공익 기타 이익이 해쳐지는 것」이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존부가 공개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존부가 공개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조장 하거나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예) 이른바 총회꾼 등에 의한 부당 요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해당 단체 등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존부가 공개되는 것으로 나라의 안전이 해쳐질 염려가 있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관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 또는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

④ 존부가 공개되는 것으로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그 외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예) 경찰로부터의 수사관계 사항 조회를 수리하고 회답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등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개인신용정보기관」이란, 개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여신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앞의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의 용어는 그 밖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법 및 시행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 3 조 이용목적의 특정(법 제15조 관련)

1.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어떠한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될지를 본인이 합리적으로 예상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특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에 필요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한 추상적인 이용 목적은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용목적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는 아래에서 특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아래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예)

- 당사의 예금의 수용
 - 당사의 여신 판단·여신 후의 관리
 - 당사의 보험의 인수, 보험금·급부금의 지불
 - 당사 또는 관련 회사, 제휴사의 금융상품·서비스의 판매·권유
 - 당사 또는 관련 회사, 제휴사의 보험의 모집
 - 당사 내부에 있어서의 시장조사 및 금융상품·서비스의 개발·연구
 - 특정의 금융상품·서비스의 구입에 있어서 자격의 확인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특정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여신 사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 등에 있어서의 이용목적은 다른 계약 조항 등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여신의 조건으로서 여신 사업에 대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여신 업무 이외의 금융상품의 다이렉트 메일의 발송에 이용하는 것을 이용 목적으로 하여 동의 시키는 등의 행위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은 해당 다이렉트 메일의 발송과 관련되는 이용 목적을 거부할 수 있다.
4.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여신 사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개인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용 목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한 이용 목적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동의의 형식(법 제16조 및 법 제23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16조 및 법 제 23조에 정하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사업자가 미리 작성된 동의 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자의 크기 및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 등에 의해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이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본인에게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미리 작성된 동의 서면에 확인란을 마련하고 본인이 체크를 실시하는 것 등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 조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법 제16조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전 본인의 동의 없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합병 그 외의 사유에 의해 다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경우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승계 전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해당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3. 전 2항의 규정은 다음으로 열거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예)

- 소득세법(1965년 법률 제33호) 제234조 제1항 등에 근거해 세무 당국이 실시하는 질문 검사 및 국세 범칙 단속법(1900년 법률 제 67호) 제1조 등에 근거해 징세 관리 또는 징세 관리가 실시하는 범칙 사건의 임의 조사에 응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131호) 제197조에 근거하는 수사관계 사항 조회에 응하는 경우
-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 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 136호) 제54조 제1항에 근거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예)

- 이른바 총회꾼 및 폭력단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예)

- 병의 예방, 치료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교환을 실시하는 경우
- ④ 나라의 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법령의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예)

- 세무 당국이 적정한 과세 실현의 관점으로부터, 개개의 질문 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임의 조사에 응하는 경우

제 6 조 민감한 정보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정치적 견해, 신교(종교, 사상 및 신조를 말한다), 노동조합에의 가맹, 인종 및 민족, 문벌 및 본적지, 보건의료 및 성생활 및 범죄력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한 정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취득,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 ① 법령 등에 근거하는 경우
 -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 ④ 나라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법령의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원천징수 사무 등의 수행상 필요한 범위에 대해 정치·종교 등의 단체 또는 노동조합에의 소속 또는 가맹에 관한 종업원 등의 민감한 정보를 취득,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는 경우
 - ⑥ 상속 수속에 의한 권리 의무의 이전 등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한 정보를 취득,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⑦ 보험업 그 외 금융분야의 사업의 적절한 업무 운영을 확보할 필요성에 의해 본인의 동의에 근거해 업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에서 민감한 정보를 취득,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는 경우
 - ⑧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생체 인증 정보를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에 이용하는 경우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민감한 정보를 전향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의해 취득,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는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경우에 각 호의 사유를 벗어난 취득,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적정한 취득 (법 제 17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거짓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본인의 이익에 부당한 침해를 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것 등을 알고 해당 정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취득할 경우 이용 목적의 통지 등 (법 제18조 관련)

1. 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미리 그 이용 목적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그 이용 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케 해야 한다.

「통지」방법에 대해서는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원칙으로서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공표」방법에 대해서는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스스로의 금융상품의 판매 방법 등의 사업형태에 맞도록 인터넷상의 홈 페이지 등에서의 공표, 사무소의 창구 등에서의 서면의 게시·비치 등 적절한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2. 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 계약서 그

외의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본다.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여신 사업에 경우 이용 목적을 명시하는 서면에 확인란을 마련하는 것 등에 의해 이용 목적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신 사업의 경우 신청시 이용 목적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신청시에 이용 목적에 대해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통지 또는 공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 그 이후에 취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미리 이용 목적을 공표하고 있지 않는 한 이용 목적의 통지 또는 공표가 필요하다.

3. 법 제18조 제4항 제4호에 대해서는 『취득 상황으로 보아, 이용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공표 또는 명시는 적용이 제외된다.

『취득 상황으로 보아, 이용 목적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전화 등에서의 자료 청구에 대해서 청구자가 제공한 주소 및 이름에 관한 정보가 청구된 자료의 송부에만 이용되는 경우이다.

제 9 조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법 제19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데이터를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예금자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 데이터의 보존 기간을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내로 하는 등 보유하는 개인 데이터의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이용 목적에 따르고, 보존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을 경과한 개인 데이터를 소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하는 보존 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안전 관리 조치(법 제20조 및 기본방침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그 취급하는 개인 데이터의 누설, 멸실 또는 손해의 방지 그 외의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기본방침·취급 규정 등의 정비 및 안전 관리 조치와 관련되는 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는 개인 데이터의 취득·이용·보관 등의 각 단계에 대응한 「조직적 안전관리조치」, 「인적 안전관리조치」 및 「기술적 안전관리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본 조에 있어서의 「조직적 안전관리조치」란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해 종업원(법 제21조 참조)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해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운용하고, 그 실시 상황의 점검·감사를 실시하는 것 등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체제 정비 및 실시 조치를 말한다.
3. 본 조에 있어서의 「인적 안전관리조치」란 종업원과의 개인 데이터를 비공개 할 것에 대한 계약 등의 체결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4. 본 조에 있어서의 「기술적 안전관리조치」란 개인 데이터 및 그것을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에의 액세스 제어 및 정보 시스템의 감시 등의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조치를 말한다.

5.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기본방침·취급규정 등의 정비로서 다음에 열거된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

(1) 규정 등의 정비

- ①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기본방침의 정비
- ②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취급규정의 정비
- ③ 개인 데이터의 취급 상황의 점검 및 감사와 관련되는 규정의 정비
- ④ 외부 위탁과 관련되는 규정의 정비

(2) 각 관리 단계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취급 규정

- ① 취득·입력 단계에 있어서의 취급 규정
- ② 이용·가공 단계에 있어서의 취급 규정
- ③ 보관·보존 단계에 있어서의 취급 규정
- ④ 이송·송신 단계에 있어서의 취급 규정
- ⑤ 소거·폐기 단계에 있어서의 취급 규정
- ⑥ 누설 사안 등에의 대응의 단계에 있어서의 취급 규정

6.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실시체제의 정비로서 다음에 열거된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 「인적 안전 관리 조치」 및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

- ① 개인 데이터의 관리 책임자 등의 설치
- ② 취업규칙 등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 조치의 정비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 ③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취급 규정에 따른 운용
- ④ 개인 데이터의 취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정비
- ⑤ 개인 데이터의 취급 상황의 점검 및 감사 체제의 정비와 실시
- ⑥ 누설 사안 등에 대응하는 체제의 정비(인적 안전 관리 조치)
- ① 종업원과의 개인 데이터의 비개시 계약 등의 체결
- ② 종업원의 역할·책임 등의 명확화
- ③ 종업원에게로의 안전 관리 조치의 주지 철저, 교육 및 훈련
- ④ 종업원에 의한 개인 데이터 관리 수속의 준수 상황의 확인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 ① 개인 데이터의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 ② 개인 데이터의 관리 구분의 설정 및 액세스 제어
- ③ 개인 데이터에의 액세스권한의 관리
- ④ 개인 데이터의 누설·훼손 등 방지책
- ⑤ 개인 데이터에의 액세스의 기록 및 분석
- ⑥ 개인 데이터를 뽑아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의 가동 상황의 기록 및 분석
- ⑦ 개인 데이터를 뽑아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의 감시 및 감사

제11조 종업원의 감독 (법 제21조 및 기본방침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 조에 있어서의 「종업원」이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조직내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업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고용 관계에 있는 종

업원(정사원, 계약 사원, 촉탁 사원, 파트 사원, 아르바이트 사원 등)뿐만 아니라, 사업자와의 사이의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이사, 집행역, 이사, 감사역, 감사, 파견 사원 등)도 포함된다.

3.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다음에 열거된 체제 정비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종업원이 재직 중 및 퇴직 후, 그 업무에 관해서 파악한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을 채용시 등에 체결하는 것.

② 개인 데이터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취급 규정 책정을 통한 종업원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및 종업원에게로의 안전 관리 의무의 주지를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

③ 종업원에 의한 개인 데이터의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사내에서의 안전 관리 조치에 규정한 사항 준수 등의 확인 및 종업원에 있어서의 개인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점검 및 감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제12조 위탁처의 감독(법 제22조 및 기본방침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 데이터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그 취급이 위탁된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람에게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위탁」이란 계약의 형태나 종류를 불문하고,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 데이터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모두를 포함한다.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3.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 데이터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해 위탁함과 동시에 취급을 위탁한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하여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위탁처에 대해서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단계이상의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처의 사업자가 재위탁처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① 개인 데이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위탁처에 있어서의 조직체제의 정비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되는 기본방침·취급 규정의 책정 등의 내용을 위탁처 선정의 기준에 정해 해당 기준에 따라 위탁처를 선정함과 함께 해당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② 위탁자의 감독·감사·보고 징수에 관한 권한, 위탁처에 있어서의 개인 데이터의 누설·도용·개찬 및 목적외 이용의 금지, 재위탁에 관한 조건 누설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위탁처의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 관리 조치를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 또는 수시에 해당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안전 관리 조치의 준수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안전 관리 조치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제13조 제3자에 대한 제공의 제한(법 제23조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에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미리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①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써,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법령의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주) 상기①~④의 구체적인 예는, 제5조 제 3항①~④에 있어서의 예시와 같다.

또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원칙으로서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서면에 있어서의 기재를 통해서,

- ①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3자
 - ② 제공을 받은 제3자에 있어서의 이용 목적
 - ③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을 본인에게 인식시킨 다음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제3자」에 대하여

「제3자」란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및 해당 개인데이터와 관련되는 본인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 법인 그 외의 단체를 묻지 않는다.

3.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제공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대해 개인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기관을 통해서 해당 기관의 회원 기업에도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기관에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있어서 본인이 개인 데이터가 개인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해당 기관의 회원 기업에도 제공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후 동의에 관한 판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동의를 얻는 서면에,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개인 데이터가 해당 기관의 회원 기업에도 제공되는 취지의 기재 및 해당 기관의 회원 기업으로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회원기업으로서 개인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표시는 『해당 기관의 회원기업으로서 개인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외연을 본인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필요하고, 회원기업의 명칭을 기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기관의 규약 등 및 회원기업명을 상시 공표하고 있는 홈페이지(블만처리 창구의 연락처 등, 제23조의 내용을 기재한 것)의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해 본인 동意的 가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또, 본인에게 표시하는 개인신용정보기관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가입 자격 및 회원 기업의 외연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개인 데이터의 적정 관리,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방지 등의 관점에서 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비밀을 지킬 의무의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얻은 자금 수요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 수요자의 변제능력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법 제23조 제2항에 대해

법 제23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본인의 요구에 응해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며, 동항 각 호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해당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용이하게 파악하는 상태』란, 본인이 알려고 생각하면 시간적으로나 수단적으로나 용이하게 알 수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스스로 금융상품의 판매 방법 등의 사업 형태에 대응한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공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무소의 창구 등에서의 상시 게시·비치, 인터넷의 홈페이지로의 상시 게재 등이 해당된다.

5. 여신 사업에 있어서의 법 제23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해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여신 사업과 관련되는 개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본 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6. 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다음에 열거된 경우에 대하여 해당 개인데이터의 제공을 받는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어 개인 데이터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② 합병 그 외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수반해 개인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 ③ 개인 데이터를 특정의 사람과의 사이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며, 그 취지 및 공동으로 이용되는 개인 데이터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범위,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 목적 및 해당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에 대해,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용이하게 파악하는 상태에 두고 있을 때.

7. 법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대해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3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에 의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범위」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외연을 나타내는 것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외연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예로서는,

- 당사 및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의 자회사
- 당사 및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연결 대상 회사 및 지분법 적용 회사

로 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동호에 정하는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관리 책임자」라고 한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불만을 접수하여 그 처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개시, 정정, 이용정지 등의 결정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동호는, 관리 책임자 이외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경과 조치

법의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으로부터의 동의에 상당하는 동의가 있으면, 시행 후에 대해서도 계속 제3자에게로의 제공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법 부칙 제3조).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법 시행 전에 간 여신 사업에 즈음하여, 개인신용정보기관에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본인으로부터 얻고 있는 경우, 가입 자격에 관한 해당 기관의 규약 등 및 회원기업명의 공표는 법의 시행 전에 실시되는 것이 적당하다.

제14조 보유 개인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표 등(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보유 개인데이터와 관계된 이용목적, 개시 등의 수속 등의 동조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상태」란, 본인이 알려고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방법 등의 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어 계속적인 공표로 예를 들면, 제23조에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선언」과 일체하는 인터넷의 홈페이지에서의 상시 게재를 실시하는 것 또는 사무소 창구 등에서의 상시 게시·비치를 실시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

또한, 이용 목적으로 제3자 제공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모든 보유 개인데이터의 이용목적」의 내용으로서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제15조 게시(법 제25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게시가 요구되었을 때는 본인에 대해 지체 없이 보유 개인 데이터를 게시해야 한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다.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①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권리 이익을 해치는 경우
- ② 해당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 ③ 다른 법령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

상기②는, 예를 들면, 여신 심사 내용 등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부가한 정보의 게시 청구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유 개인 데이터를 게시하는 것으로써 평가·시험 등의 적정한 실시가 방해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지만, 게시해야 할 보유 개인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요구된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게시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경우, 본인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지와 그 결정의 이유에 대해, 근거로 한 법의 조문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설명을 지체 없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정 등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데이터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해당 보유 개인데이터의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이하, 「정정 등」이라고 한다)가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이용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사실의 확인 등의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내용의 정정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정 등을 실시했을 경우 또는 정정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을 경우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정정 등을 실시했을 경우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정정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정정 등을 실시하지 않는 근거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타내어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정지 등(법 제27조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위반해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 또는 법 제 17조의 규정에 위반해 취득된 것이라고 하는 이유에 의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의 정지 또는 소거(이하 이 조에 대해 「이용 정지등」이라고 한다)가 요구되었을 경우이며, 그 요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지체 없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정지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정지 등에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외의 이용정지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때는 이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가 법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게로의 제공의 정지가 요구되었을 경우이며, 그 요구에 이유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게로의 제공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게로의 제공의 정지에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외의 제3자에게로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며, 본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것에 대신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이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요구된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용정지 등을 실시했을 때 또는 이용정지 등을 실시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요구된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로의 제공을 정지했을 때 또는 제3자에게로의 제공을 정지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했을 때는, 본인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취지(본인으로부터 요구된 조치와 다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를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이유의 설명(법 제28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4조 제3항, 법 제25조 제2항, 법 제26조 제2항 또는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본인으로부터 요구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취지를 통지하는 경우 또는 그 조치와 다른 조치를 취하는 취지를 통지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 판단의 근거 및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게시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속(법 제29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게시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정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선언」과 일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상시 게재를 실시하거나, 또는 사무소의 창구등 에서의 게시·비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법 제2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근거하여 게시 등의 요구를 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대리인 확인의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확인 수속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대리인에 의한 게시 등의 요구에 대해서, 사업자가 본인에게만 직접 게시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제20조 수수료(법 제30조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게시 등 수속의 평균적 실비의 예측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실비를 감안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수수료의 액수를 정한다.

(일본)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청 고시, 2004. 12.)

제21조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불만처리(법 제31조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만을 접수 받았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는 불만 처리순서의 책정, 불만 접수창구의 설치, 불만 처리에 해당되는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연수 등, 불만 처리를 적절하고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2조 누설사안 등의 대응(기본방침 관련)

1.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누설사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독 당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누설사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2차 피해의 방지, 유사 사안의 발생 회피 등을 위하여, 누설사안 등의 사실관계 및 재발 방지책 등을 시급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3.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누설사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설사안 등의 대상이 된 본인에게 신속하게 누설사안 등의 사실 관계 등의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정보보호선언의 책정(법 제18조, 법 제24조 및 기본방침 관련)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전 방침을 미리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생각 및 방침에 관한 선언(이른바 프라이버시 정책, 프라이버시 성명서 등. 본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개인 정보 보호 선언』이라고 한다)을 책정하고, 예를 들면 다음에 열거된 내용을 인터넷의 홈페이지에서 상시 게재, 또는 사무소의 창구 등에서의 게시·비치 등에 의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① 관계 법령 등의 준수,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는 것 및 불만 처리에 적절히 임하는 것 등, 개인정보보호에의 취조방침의 선언
- ② 법 제18조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의 통지·공표 등의 수속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 ③ 법 제24조에 있어서의 개시의 수속 등,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제 수속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 ④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질문 및 불만처리의 창구